관세연구 25-01

www.kipf.re.kr

# 주요국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비교

김문정·김미정

2025.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문 정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미 정 선임연구원

# 목 차

Ⅰ. 서론 ····· 1

Ⅱ. 우범화물의 범위 및 현황 ····· 4
1. 우범화물의 범위 ····· 4
가. 우범화물의 정의 ····· 4
나. 적용 대상 ····· 6
2. 우범화물 반입 실태 및 대책 현황 ····· 8
가. 우범화물 단속 및 적발 현황 ····· 8
나. 주요 우범화물 ····· 17
다. 우범화물 반입에 대한 대책 현황 ····· 21

Ⅲ. 우리나라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 24
1. 위험관리 개관 ····· 24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24
2.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 28
가.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28
나. 사후관리 ····· 41
3. 소결 ····· 45
가. 체강검사 권한의 불명확성 ····· 45
나. 국내외 협력 체계의 미흡 ····· 46

다.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의 한계 ····· 46
라. 사후관리 체계의 불충분성 ····· 47

Ⅳ. 주요국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 48
1. 국제규범 ····· 48
가. 위험관리 개요 ····· 48
나. WCO SAFE Framework ····· 49
2. 미국 ····· 54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54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60
다. 사후관리 ····· 72
3. 일본 ····· 75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75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79
다. 사후관리 ····· 89
4. 호주 ····· 92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92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96
다. 사후관리 ····· 116
5. 인도네시아 ····· 121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121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123
다. 사후관리 ····· 129

Ⅴ. 국제비교 ····· 131
1. 위험관리 조직 ····· 131

2. 선별기준 ····· 132
3. 선별시스템 ····· 133
4. 신체검색 권한 ····· 134
5. 사후관리 ····· 135

Ⅵ. 결론 및 시사점 ····· 137
1. 신변검색 등 법적 권한 명확화 ····· 138
2. 국내외 협력 강화 ····· 140
가. 국내 협력 ····· 140
나. 국제 협력 ····· 141
3. 위험관리 고도화 ····· 142
가. 기술인프라 확충 ····· 143
나.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요구 고도화 ····· 145
4. 사후관리 강화 ····· 146

참고문헌 ····· 149

# 표 목차

〈표 Ⅱ-1〉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 9
〈표 Ⅱ-2〉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 11
〈표 Ⅱ-3〉 2024년 주요 마약류 성분 및 적발된 불법 의약품 ····· 13

〈표 Ⅳ-1〉 SAFE Framework Pillar 1(세관 간 협력표준) ····· 50
〈표 Ⅳ-2〉 CBP의 위해물품 압수 현황(Import Safety Seizures) ····· 58
〈표 Ⅳ-3〉 일본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 ····· 80
〈표 Ⅳ-4〉 호주 수출입 금지물품 목록 ····· 97
〈표 Ⅳ-5〉 호주 관세국경 위험관리 모델 ····· 102
〈표 Ⅳ-6〉 인도네시아 Channeling System ····· 125

〈표 Ⅴ-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국경 위험관리제도 비교 ····· 136

# 그림 목차

[그림 Ⅱ-1] 최근 5년 마약 단속 현황 ····· 10
[그림 Ⅱ-2] 자가소비 및 유통목적 마약밀수 ····· 10
[그림 Ⅱ-3]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10대 단속 현황 ····· 12
[그림 Ⅱ-4] 최근 5년간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적발 동향 ····· 13
[그림 Ⅱ-5] 여행자 휴대품 적발 사례 ····· 14
[그림 Ⅱ-6] 선박·해상화물 적발 사례 ····· 15
[그림 Ⅱ-7] 주요 마약류 ····· 17
[그림 Ⅱ-8] 불법 신종마약 ····· 18
[그림 Ⅱ-9] 임시 마약류 ····· 19
[그림 Ⅱ-10] 관세청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 22

[그림 Ⅲ-1] 우리나라 위험관리 업무수행 절차 ····· 30
[그림 Ⅲ-2]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 34

[그림 Ⅳ-1] 월별 마약류 단속량 및 마약류 유형별 단속량 ····· 59
[그림 Ⅳ-2] 불법 약물의 적발건수와 압수량 추이 ····· 78
[그림 Ⅳ-3] 통합 위험관리 모델(전략·운영·전술) ····· 102

# Ⅰ. 서론

□ 최근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우범화물(High-Risk Cargo)에 대한 국경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4년 한 해 동안 총 862건, 787kg의 마약이 국경단계에서 적발되었으며, 이는 약 2,600만명(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함[1)]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조직 운영, 자체 정보수집·분석 역량, 선별·사후관리제도를 기반으로 위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차단을 강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수입 위해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일반 화물, 우편물 등을 주요 반입 경로로 하고 있으므로 통관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선별관리가 중요함

□ (주요 문제제기) 특히 여행자 휴대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 첨단 장비로 의심 화물을 포착한 후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을 통해 적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2)]

○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시에서 정하는 선별기준은 별도의 내부 훈령으로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행정명령이므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비공개성 규범임

---

1) 관세청, 「관세청, 지난해 총 862건, 787kg 마약 적발.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 1. 21.
2)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 7. 31., p. 168.

□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범화물로 인한 국경관리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관련 법령과 대응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인프라 우범화물의 범위와 우리나라의 반입 실태 및 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위험관리제도의 조직·현황, 검사권한,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조사함

□ 다만 위험관리제도는 범죄예방 차원이다보니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으며, 우범자의 선별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안상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개된 범위 내에서 가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연구대상) 우범화물의 밀반입경로는 휴대품, 화물(비휴대품), 특송·우편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장 단속 및 검사 중심의 위험관리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범위를 화물(비휴대품)과 휴대품에 한정하였으며, 위험관리 방식과 운영구조가 상이한 특송·우편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휴대품’이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화물(비휴대품)’이란 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을 의미함

□ (논의방식) 또한 위험관리제도 가운데 우범화물의 사전 식별·관리 수단을 ‘선별기준’과 ‘선별시스템’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양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적용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선별기준’은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판단규칙·요소로, 법령·정책 기준과 위험평가 요소(과거 위반 이력, 운송경로 등)를 포함함

○ ‘선별시스템’은 이러한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술·시스템·장비로, 전산시스템(ATS, NACCS, ICS 등), 사전정보 수집·처리 모듈, 각종 검사 장비, 데이터 분석 등을 포괄함

□ (해외 국가 조사) 주요국 사례 조사의 경우 미국,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춘 일본, 국경 안보와 세관 기능을 통합한 조직을 갖춘 호주,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특히 호주의 통합 운영은 선진적 관리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인도네시아의 법적 권한 규정은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점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하여 해외 조사 대상국에 포함함

○ 각 국가별로 위험관리 조직, 관세법상 수입 금지물품·선별기준·선별시스템·신변검색 권한 등은 사전관리 체계로, 통관 후 제도와 벌칙은 사후관리 제도로 구분하였음

○ 다만 국가별 위험관리제도와 운영 방식은 자국의 경제·통상·안보 환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비교 가능한 공통분모가 충분하지 않으며, 단순한 국제 비교만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적용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범화물의 범위·반입 실태 및 대책 현황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의 조직·현황, 검사권한,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국제규범과 함께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의 위험관리제도를 조직·현황,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조사함

○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의 위험관리제도를 비교함

○ 제Ⅵ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적용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작성하였음

# Ⅱ. 우범화물의 범위 및 현황

## 1. 우범화물의 범위

### 가. 우범화물의 정의

#### 1) 국제기구 차원의 정의

□ WCO SAFE Framework Annex I(Definitions)에 따르면 고위험 화물(High Risk Cargo)이란 제출된 정보가 불충분한 화물, 저위험으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없는 화물, 정보 분석 및 첩보에 의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화물, 위험 점수화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화물을 의미함[3)]

○ 대표적으로 마약, 무기, 위조품, 불법 자금 등 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이 이에 해당함

□ 이에 따라 대규모 마약 등 금지 품목을 밀수하는 데 사용되는 화물은 고위험 선별 대상으로 간주되며, WCO에서 발간한 『2023년도 우범화물 보고서(Illicit Trade Report 2023)』에서는 고위험화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4)]

○ ⅰ) 위험기반분석에 따라 선별된 화물

- Customs Enforcement Network(CEN)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된 밀수 추세, 운송 수단, 은닉 기법 등을 반영해 위험 화물로 식별(예: 컨테이너 속 바나나에 은

3) WCO SAFE Framework Annex I(DEFINITIONS)
4) WCO, *Illicit Trade Report 2023*, 2024.

닉된 코카인, 냉동 수산물 포장에 감춰진 금괴 등)

○ ii) 국가별 위험 수준 평가에 따른 집중 관리 품목
- 국가 또는 지역별로 "가장 높은 위협"으로 인식된 품목으로 마약, 담배, 무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환경 위해물품(CITES 동물, 플라스틱 폐기물 등)

○ iii) 밀수 조력자(Enablers) 정보와 결합된 화물
- 항만 근무자, 운송업체, 창고 직원 등의 내부 협력 가능성 여부도 위험도 판단 요소로 활용

○ iv) 복합적 사전정보 및 탐지 기술이 요구되는 화물
- 비침입검사장비(Non-Intrusive Insepction, NII),[5] 스마트 컨테이너, 위성 추적 등으로 식별 필요
- 특히 마약류나 무기는 기술적 탐지 없이 발견이 어려움

□ 한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서는 고위험 화물(High Risk Cargo)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을 언급하면서, 각국이 세관 검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험 기반 선별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6]

### 2) 국내법상 법적·행정적 정의

□ 우리나라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위해물품'이나 '우범물품'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며, 해당 개념은 주로 관세청을 비롯한 단속·수사기관이 실무상 해석과 판단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

○ '우범'이나 '위해'라는 용어 자체가 고정된 법 개념이 아니라, 위험 기반의 동태적 판단 요소임

---

5) 화물을 열어보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식
6) WTO TFA Article 7.4

□ 다만 특정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 특별법 또는 관련 규제 법령에서 '위해성' 또는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해물품'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각 법령의 위해성·위험성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류·관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류 등을 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서 위해물품이란 총포류, 실탄류, 화약·폭약류, 도검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은 훈령 별표 3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 행정 기준상 위해물품의 범위를 일정 부분 구체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7)]

## 나. 적용 대상

□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화물은 현장 단속·검사 중심의 측면에서 반입 유형에 따라 크게 '휴대품'과 '화물(비휴대품)'로 구분할 수 있음

□ 휴대품은 여행자나 승무원이 직접 소지하여 반입하는 화물로, 비교적 소량이지만 고위험 물품을 신체 또는 수하물에 은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범여행자를 식별하고 신변검색 또는 수하물 검사 등의 단속을 실시함

□ 화물(비휴대품)은 상업적 거래 목적의 수입 컨테이너 화물, 항공·해상 운송화물을 의미하며, 대규모 밀수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검사와 물류경로 추적 등을 실시함

---

7)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2호

### 1) 휴대품

□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함[8)]

○ 여행자 가운데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 중에서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적정한 세관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함

□ 여행자 휴대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함[9)]

○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의 물품을 말함[10)]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11)]

---

8)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9)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10)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1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 2) 화물

□ 수입 화물이란 「관세법」상 별도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에서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물품을 의미함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2. 우범화물 반입 실태 및 대책 현황

### 가. 우범화물 단속 및 적발 현황

#### 1) 마약류[12)]

가) 정의[13)]

□ 마약(Narcotics)은 그리스어 narko(to make numb, 감각을 없애는)에서 유래한 단어로 특정 약리 작용(정신 마비, 진통, 다행감, 탐닉)과 함께, 의존과 남용을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보건·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 약물을 의미함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말함

○ 일반적으로 약리 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됨

---

12) 관세청, 「관세청, 지난해 총 862건, 787kg 마약 적발.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 1. 21.

13)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 6., pp. 2~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세 종류로 분류함

○ '마약'은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이를 원료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 천연마약은 양귀피, 아편, 코카잎(엽)을, 추출 알카로이드는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을, 합성마약은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을 말함

○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을 말함

○ '대마'는 대마초의 줄기·잎·꽃·수지 및 그 제품을 말함

나) 단속 및 적발 현황

□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짐

○ 이는 일평균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함

〈표 Ⅱ-1〉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단위: 건, g)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전년 대비(%) | |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총괄 | 696 | 148,429 | 1,054 | 1,272,474 | 771 | 624,451 | 704 | 769,363 | 862 | 787,199 | 22 | 2 |

자료: 관세청, 「관세청, 지난해 총 862건, 787kg 마약 적발.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 1. 21.

□ 최근 5년간 마약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2건을 특이치로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음

○ (2020년) 148kg→(2021년) 469kg→(2022년) 624kg→(2023년) 769kg→(2024년) 787kg

- 2021년 총 1,272kg 중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여 적발된 필로폰 등 803kg 제외

[그림 Ⅱ-1] 최근 5년 마약 단속 현황

(단위: 건,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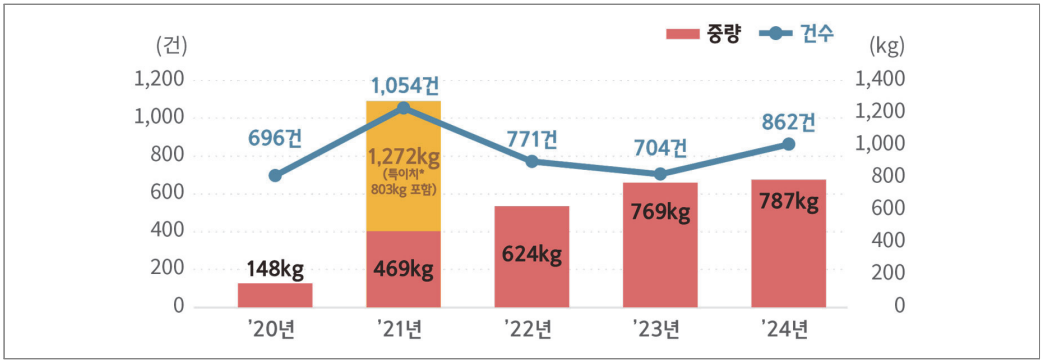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청, 지난해 총 862건, 787kg 마약 적발.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 1. 21.

□ 적발 건수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됨

○ 2024년 적발된 마약 사건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확인된 밀수는 469건으로, 2023년 297건과 비교하면 58% 증가함

○ 유통 목적 밀수 중 10kg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kg으로 2023년 10건, 184kg과 비교하면 건수와 중량 모두 약 2배 증가함

[그림 Ⅱ-2] 자가소비 및 유통목적 마약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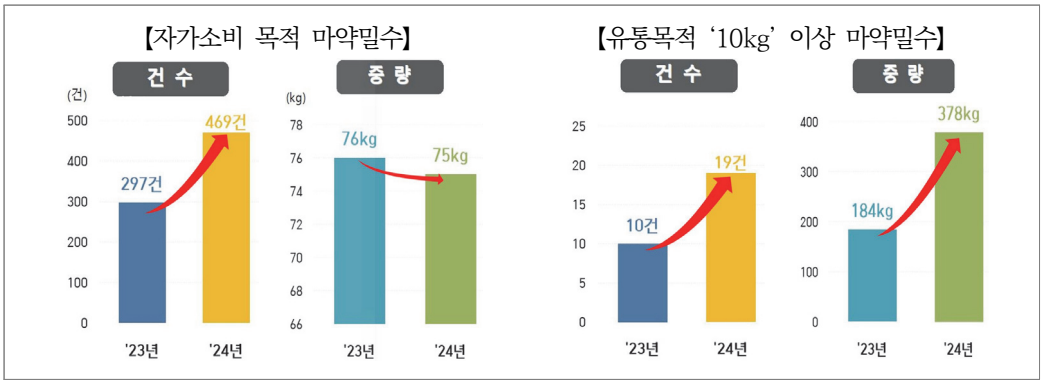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청, 지난해 총 862건, 787kg 마약 적발.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 1. 21.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는 과거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의 조합으로 마약류 접촉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그 결과 범죄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14)]

○ 2024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마약류 사범은 649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음[15)]

〈표 Ⅱ-2〉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 연령 / 마약류 | 19세 이하 | 20~29 | 30~39 | 40~49 | 50~59 | 60세 이상 | 연령 미상 | 합계 |
|---|---|---|---|---|---|---|---|---|
| 합계 | 649<br>(2.8) | 7,515<br>(32.6) | 6,481<br>(28.2) | 3,571<br>(15.5) | 2,337<br>(10.2) | 2,110<br>(9.2) | 359<br>(1.6) | 23,022<br>(100.0) |
| 마약 | 10<br>(0.6) | 149<br>(7.6) | 197<br>(10.1) | 126<br>(6.4) | 191<br>(9.8) | 1,187<br>(60.7) | 94<br>(4.8) | 1,954<br>(100.0) |
| 향정[1)] | 564<br>(3.2) | 6,140<br>(34.6) | 5,065<br>(28.5) | 3,059<br>(17.2) | 1,957<br>(11.0) | 779<br>(4.4) | 187<br>(1.1) | 17,751<br>(100.0) |
| 대마 | 75<br>(2.2) | 1,226<br>(37.0) | 1,219<br>(36.8) | 386<br>(11.6) | 189<br>(5.7) | 144<br>(4.3) | 78<br>(2.4) | 3,317<br>(100.0) |

주: 1) '향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줄임말로 사용됨
자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 6., p. 71.

□ 특히 매년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점차 그 비중이 커지면서 2023년 5.3%의 비중을 차지함[16)]

○ 2023년 10대 마약류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481명) 대비 207.1% 급증하였으나, 2024년 649명으로 56.1% 감소하였음

14) 김낭희·이선형·Weisheit, R. A.,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11., p. 20.
15)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 6., p. 71.
16)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 6., p. 197.

[그림 Ⅱ-3]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10대 단속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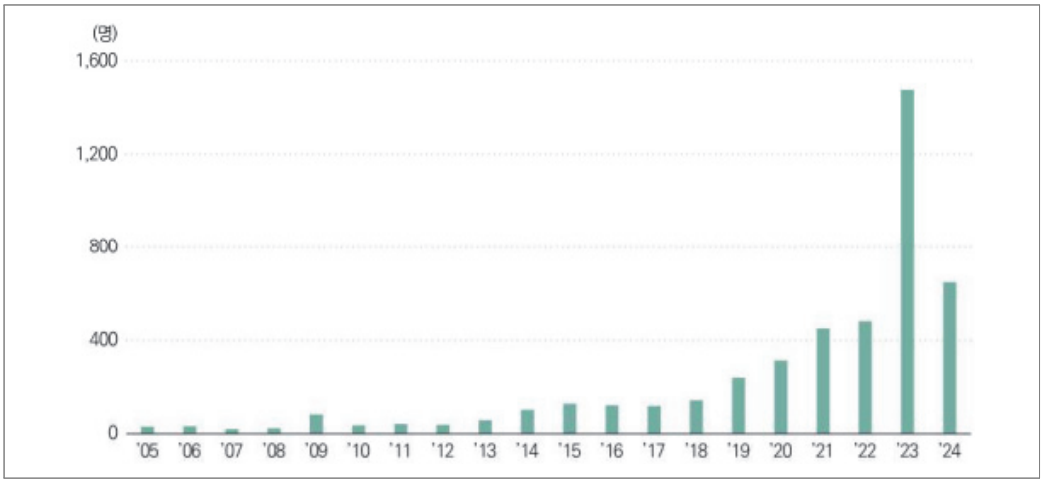


자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 6., p. 197.

### 2) 불법 의약품

□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함

○ 특히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 말까지 65건, 1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함

[그림 Ⅱ-4] 최근 5년간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적발 동향

(단위: 명,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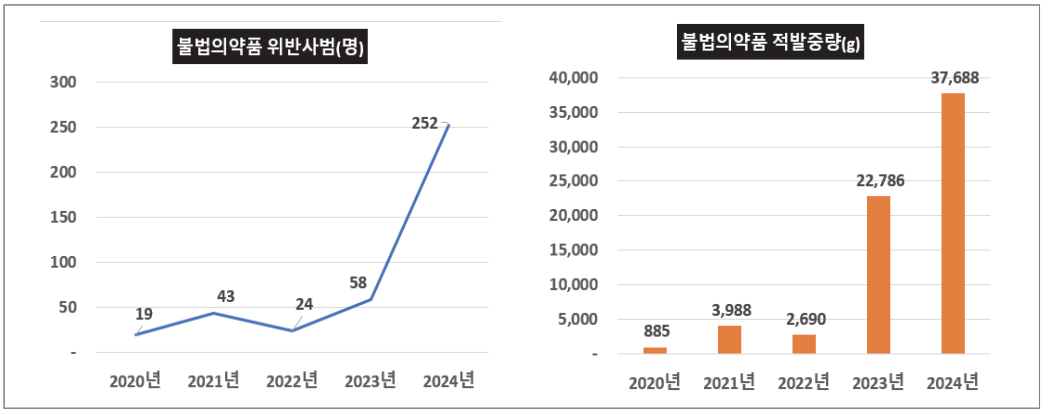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2025. 3. 18.

□ 관세당국은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임

〈표 Ⅱ-3〉 2024년 주요 마약류 성분 및 적발된 불법 의약품

| 구분 | 마약성분 | 해당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주요 제품명) | 적발건수 |
|---|---|---|---|
| 1 | 코데인 | Terpin Codein, Cedipect | 124 |
| 2 | 덱스트로메토르판 | Dayquil, NyQuil | 67 |
| 3 | 알프라졸람 | Xanax, 아보좌륜편(阿普唑仑片) | 30 |
| 4 | 졸피뎀 | Ambien, Somno, Zolpidem | 18 |
| 5 | 로라제팜 | Ativan, 로라서반편(劳啦西泮片) | 15 |
| 6 | 메틸페니데이트 | Ritalin, Medikinet | 14 |

〈표 Ⅱ-3〉의 계속

| 구분 | 마약성분 | 해당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주요제품명) | 적발건수 |
|---|---|---|---|
| 7 | 모르핀 | 지해보편, 극해편 | 10 |
| 8 | 부포테닌 | 육신환 | 6 |
| 9 | 옥시코돈 | Oxycodone viatris, OxyNormORO | 5 |
| 10 | 타펜타돌 | Tapaday Gold 250, TYPENTA 200 | 3 |
| 합계 | | | 292 |

자료: 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2025. 3. 18.

### 3) 주요 적발 사례

가) 휴대품

□ 휴대품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자 신변이나 여행자 수화물에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함

[그림 Ⅱ-5] 여행자 휴대품 적발 사례

[사례 1] 항공여행자 신변에 필로폰 은닉

태국발 항공여행자가 속옷 속에 은닉한 필로폰 300g 적발

2024. 11월/인천공항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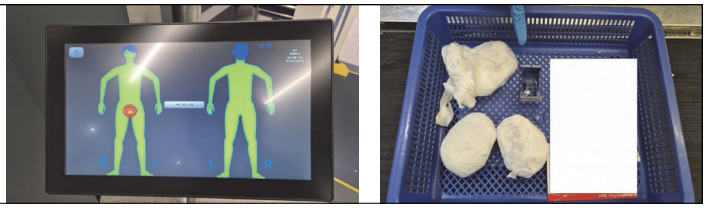

[사례 2] 항공여행자 이용 스노우볼 액상에 녹인 필로폰 은닉

말레이시아발 항공여행자가 필로폰을 녹여 크리스마스 스노우볼 액상에 은닉한 제품 12점(피포함 7.6kg) 적발

2024. 11월/인천공항세관

자료: 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2025. 3. 18.

나) 화물

□ 화물은 주로 해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벌크선과 같은 선박이 밀수의 대상이 되는데, 마약을 일정 단위로 포장해서 벌크화물 내부에 은닉하거나 선박 내부 선저의 방향키, 해수 흡입구 등의 선박 구조물에 은닉하기도 함

□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올해 4월 적발된 코카인 2톤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함[17)]

○ 가장 최근 사례로는 올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을 적발한 바 있음

- 압수된 코카인은 5,70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됨

○ 그 밖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부산항에 반입된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kg, 2024년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캐나다발 선박 하부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33.2kg이 적발됨

[그림 Ⅱ-6] 선박·해상화물 적발 사례

[사례 1] 멕시코발 대형 항공기 부품 필로폰 은닉

| | | |
|---|---|---|
| 멕시코발 대형 항공기 부품(헬리컬 기어)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402.8kg 적발<br><br>2021. 7월/부산세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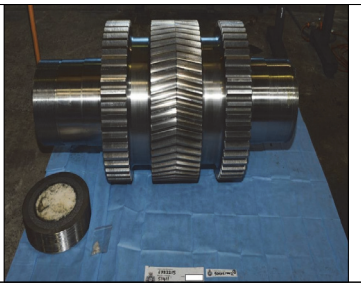 | |

17) 관세청, 「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보도자료, 2025. 5. 8.

[그림 Ⅱ-6]의 계속

[사례 2] 페루발 컨테이너화물 코카인 은닉

| | | |
|---|---|---|
| 페루발 컨테이너 화물(신고 품목: 아보카도)에 은닉한 코카인 400.4kg 적발<br><br>2021. 10월/부산세관 | | |

[사례 3] 캐나다발 화물선 선체 하부 코카인 은닉

| | | |
|---|---|---|
| 캐나다발 화물선 선체 하부 씨체스트*에 은닉한 코카인 28.4kg 적발<br><br>* Sea Chest: 엔진 냉각을 위한 해수 흡입구<br><br>2024. 4월/대구세관 | | |

[사례 4] 미국발 냉동컨테이너 코카인 은닉

| | | |
|---|---|---|
| 미국발 냉동컨테이너 냉동 패널 내부에 은닉한 코카인 30kg 적발<br><br>2024. 4월/부산세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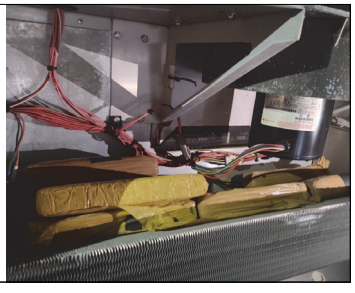 |

자료: 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2025. 3. 18.

## 나. 주요 우범화물

### 1) 마약류

가) 마약류의 종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World Drug Report 2024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마약류 사용자는 약 2억 9,200만명으로, 이는 전 세계 15~54세 인구의 약 5.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마약 문제의 장기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최근 3년간(2022~2024년) 신종 마약류 확산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마약류 감정백서 2024」로 발간하고 있음

□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마약류의 종류는 마약류 384종과 임시마약류 94종을 포함하여 총 478종이며, 주요 마약류는 [그림 Ⅱ-7]과 같음

○ 마약(126종): 코카인·헤로인(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

○ 향정신성의약품(257종): 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 대마(1종):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그림 Ⅱ-7] 주요 마약류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4&cntntsId=810, 검색일자: 2025. 5. 28.

□ 불법 신종마약류에는 알킬 니트라이트(일명 러쉬)와 합성대마 등이 세관에 적발되고 있으며 [그림 Ⅱ-8]과 같음

○ 알킬 니트라이트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러쉬(Rush), 정글주스(Jungle Juice) 등으로 판매되며 복용 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

○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THC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제조한 신종마약으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그림 Ⅱ-8] 불법 신종마약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6&cntntsId=812, 검색일자: 2025. 5. 28.

□ 임시 마약류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가운데 오남용 시 폐해가 심각하여 국내 반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로 우선 지정, 수입 등을 통제하는 물질을 말함

○ 임시 마약류로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3년간 마약류에 준하여 유통·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되며, 마약류 지정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지정 가능

○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종류는 총 94종이며, 이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그림 Ⅱ-9]와 같음

[그림 Ⅱ-9] 임시 마약류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7&cntntsId=813, 검색일자: 2025. 5. 28.

나) 마약류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34조의2에 따라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별도로 지정된 임시 마약류는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음[18)]

○ 2024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관세법」상 수출입제한 대상에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19)]

○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18) 「관세법」 제234조의2
19) 「관세법」 제264조의11

□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 외교부 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법무부 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 검찰총장

-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또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21]

---

20)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3
21) 「관세법」 제266조의2

### 2) 식품·의약품류

□ 주요 우범화물 유형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류는 위해성 여부에 따라 국민보건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반입 시에는 허가·승인 절차 준수 여부, 성분·규격의 적합성, 유해 성분 함유 여부 등을 관리함

□ 「관세법」 제206조 및 제219조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음

○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우범화물 반입에 대한 대책 현황

□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2023년 10월부터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음[22)]

○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대응정책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하나로 '국민안전을 위한 위해물품 차단'을 목표로 설정함

22) 관세청,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5. 1. 21.

○ (마약)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정례화, 기존 동남아 위주 국가에서 미주, 유럽 등 국가로 국내외 수사기관 공조 확대, 마약 탐지 시설·장비 확충 등 「스마트 마약단속체계 2.0」 고도화

○ (협업) 국민안전 정보협업팀 중심 타 국경기관과 협업분석 확대, 세관장확인 일몰제 도입, 우범여행자 여권정보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확대

○ (전자상거래) 해외 플랫폼의 자발적 협력 유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한 1년 단위 갱신제 도입, 안정성 분석 대상물품·탐지성분 확대

[그림 Ⅱ-10] 관세청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자료: 관세청,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5. 1. 21.

□ (단속 강화)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밀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입경로별 맞춤형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항공화물에 은닉한 마약밀수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선별시스템을 개발·활용해 고위험 화물을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사함

○ 여행자가 신변·수하물에 은닉한 마약밀수의 경우, 입국장 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입국장의 혼잡한 상황을 틈탄 마약운반책 바꿔치기 등 세관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하는 검사 방식을 도입함

○ 해상화물에 은닉한 마약의 경우 선박 하부에 은닉한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를 시범 운영하고, 고성능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도입할 예정임

□ (국제공조)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여 국경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하고 있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318건, 475kg의 마약밀수를 적발함

○ 기존 협력국인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의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독일과는 양국 최초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임

□ (정보제공) 관계부처에서 보고서를 발간하여 마약류 단속 및 범죄 현황이나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고위험 약물의 적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음

○ 검찰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단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1990년부터 매년 국내·외 마약범죄 주요 통계와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있음[23)]

○ 「마약류 감정백서」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마약류 확산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신종 마약류 탐색 플랫폼 구축, 지방 감정 인력 재배치, 장비 현대화 등 마약 분석 관련 종합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24)]

---

23)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 6.

2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국내 확산 실태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 발간」, 보도자료, 2025. 5. 26.

# Ⅲ. 우리나라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 1. 위험관리 개관

###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1) 위험관리 조직

□ 우리나라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중 국민 건강과 안전, 국가 산업에 잠재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위해 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와 차단을 수행하며, 위험기반(border risk-based) 관세국경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

□ 여행자 휴대품 및 화물과 관련된 우범물품의 감시·단속 업무는 관세청 통관국과 위험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21년 조직 개편으로 개편된 통관국은 관세국경감시과와 수출입안전검사과 등을 포함하며, 통관 전반의 정책·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화물 입항 관리,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7년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위험관리센터)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우범화물 선별,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관세국경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특히 위험관리센터는 관세청 차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위험관리 전담 조직으로 조사국, 통관국, 정보국 등 각 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적인 위험 관리를 수행함

○ 센터는 총괄기획팀, 선별관리팀, 전략분석팀, 국민안전협업정보팀, 해외정보팀으로 구성됨

- 국민안전협업정보팀은 소속 기관 관할 위험정보 입수, 분석, DB화를 목적으로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원 소속 전문가와 합동근무를 하고 있음
- 해외정보팀은 관세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위험 관리 해외 정보의 채널 역할을 하며, 70여개 국가의 위험 관리 조직과 채널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함

□ 위험관리센터는 법규준수도 관리, 위험 선별 및 차단,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운영, 국내외 정보 협업 등 다층적 기능을 통해 국경 안전을 강화하고 있음

○ (법규준수도 관리) 위험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며, 2025년 기준 약 53만개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를 평가 및 관리함

○ (위험 선별 및 차단) 마약 등 위해물품 및 관련자를 사전 식별하여 국경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함

○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운영)[25]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여행자, 특송, 우편, 일반 화물 등 여러 채널의 정보와 조사, 심사, 통관 등 관세행정 전반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함

○ (국내외 정보 협업)

- 국내 협업: 환경부, 식약처 등과 공동으로 국민안전협업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 정보 수집·분석 및 데이터 공유를 체계화함
- 해외 협업: 해외정보팀을 중심으로 약 70여 개국 세관·기관과 위험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해외 위험정보의 수집·교환 채널 역할을 수행함

---

25)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통관 시스템과 함께 해외 15개국에 수출된 전자통관 시스템 중 11개국에 위험관리 시스템이 탑재됨

□ 한편 본부 세관에는 위험관리 전담 인력은 배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전담조직은 없어 밀반입 규모에 비해 정보 접근성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위험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26)]

○ 2021년 조직개편 이후 일선 세관을 기능별로 나누어 수입화물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부서와 위험화물을 타켓팅하는 부서로 개편하고, 위험화물 타켓팅 부서에 통관정보과와 통관검사과를 신설함[27)]

### 2) 위험관리 현황

□ 우리나라 관세행정상 위험관리체계는 통관전 사전통제, 통관후 사후심사(Post Audit) 등 직접통제 방식과 위험관리 파트너십에 근거한 AEO 제도 운영 등 다층적 위험관리 기법을 채택·발전시켜 왔음[28)]

○ (사전통제) 관세청은 1990년대 초부터 관세청의 우수한 전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위험물품에 대한 전산선별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음

○ (사후통제) 2000년 심사정책국(현재 심사국)을 신설하여 정기, 기획심사(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유사) 운영으로 사후심사 체제(Post Audit)로 운영되고 있음

○ (AEO) 2009년 WCO가 권고하는 성실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AEO 제도 도입으로 수출입업체 등의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위험관리 인프라는 ① 위험관리 기반의 의사결정 ② 현장 위험동향 입수 및 전파 ③ 위험관리 역량 강화 등의 핵심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음[29)]

---

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7. 4.,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91888, 검색일자: 2025. 7. 5.

27) 『법률신문』,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21. 7. 16.,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71529, 검색일자: 2025. 7. 26.

28) 김경호,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통한 관세국경관리 효율화 방안」,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 4. 22., p. 63.

29)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 위험관리 기반의 의사결정의 경우 연 1회 위험관리 정책협의회와 월 1회 위험관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현장 위험동향 입수 및 전파의 경우 월 4회 현장 영상회의를 통해 현장 발생 위험정보의 신속한 속한 수집·분석·공유로 본청과 세관 간 긴밀한 협업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있음

○ 위험관리 기반의 의사결정의 경우 연 2회 위험관리정책 자문위원회, 연 1회 위험관리 정책협의회와 월 1회 위험관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 또한 국내 협력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국경 관리 사업으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을 추진하며,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있음[30)]

○ 양 부처는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밀수 및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을 공동 추진함

○ 주로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방사선(X-Ray)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체계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연구과제를 수행함

○ 대표적 성과로는 마약 등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방사선(X-ray) 장비를 국산 개발한 사례가 있음

□ 국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40조의6, 각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 근거하여 핫라인 등을 통한 국가 간 위험정보 교류로 국제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해 교류하고 있음[31)]

---

30) 관세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하다」, 보도자료, 2024. 10. 31.;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5&bbsId=1364&nttSn=10145383&nttSnUrl=af21227d1c8210f9f8fb7732b14a6e1e, 검색일자: 2025. 8.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31)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 2.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 가.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1) 수입금지·제한 물품(법령)

□ 우범화물의 선별 절차는 관세당국이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핵심 과정이며, 통관 제한 또는 금지 물품에 관한 법적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선별기준으로 작용함

□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입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우범화물의 위험 분석 및 대상 선정 절차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임

□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은 다음과 같음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또한 「관세법」 제234조의2에 따라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는 허가·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2) 선별기준

□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32]

---

3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6호

○ 이를 통해 물품에 마약류 등의 위해물품, 수출입금지품, 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이 은닉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함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33]

○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34]

○ 이는 외국물품을 감시·단속하는 세관공무원에게 부여된 포괄적 검사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임

□ 한편 수출입금지물품이나 위해물품에 대한 승객예약자료를 요청 및 열람하거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및 열람 등) 우리나라로 입항하거나 우리나라로부터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일정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35]

-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위반하여 마약류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협조)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33) 「관세법」 제246조 제2항
34) 「관세법」 제265조
35) 「관세법」 제137조의2

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36]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및 그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절차는 WCO의 위험관리 7단계 절차를 국내 실정에 맞게 4단계로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음[37]

○ 1단계(위험인식)는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함

○ 2단계(위험분석)는 분석담당자를 지정한 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처리함으로써 선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3단계(검사 및 심사 선별)는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선별기준을 등록한 뒤 실시간 점검을 통해 검사대상을 결정함

○ 4단계(조치결과 환류)에서는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그림 Ⅲ-1] 우리나라 위험관리 업무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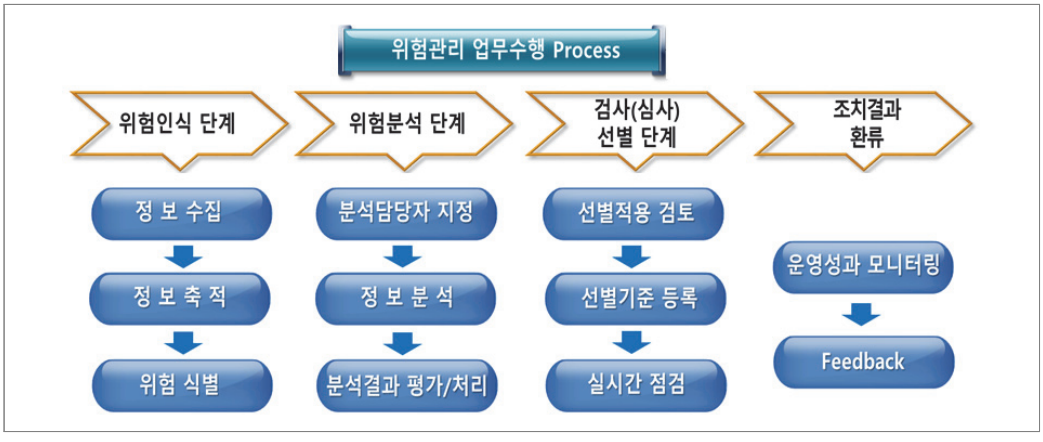


자료: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36) 「관세법」 제264조의10

37)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 실무상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우범화물의 선별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세관공무원이 직접 수작업을 통해 선별하는 방법 ② 미리 등록한 기준에 따라 자동선별되는 전산선별 방법 ③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38]

○ (세관공무원의 수작업 선별) 세관공무원이 화물 및 서류를 직접 분석하여 현장 경험과 직관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선별 정확도가 개인 역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전산선별) 수출입 관계 법령이나 적발 내역 및 위험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우범화물 선별기준을 개발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전산에 의해 자동 선별되는 방법으로, 위험화물 선별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나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신기술 활용 선별) 전산선별 방식의 하나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반 위험평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험 화물을 자동 식별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한 높은 정확도와 지속적인 학습에 따른 성능 향상이 가능하나 초기 구축 비용과 기술 인프라가 필요하고, 알고리즘 오류의 한계가 있음

□ 국내외 위험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고위험물품 및 고위험여행자를 선별하며, 이를 위해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39]

○ (위험정보 수집) 내부 직원,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위험분석을 통해 선별기준 개발,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됨

○ (정보분석 및 활용) 고위험물품 및 고위험여행자 등의 전산선별을 실시하고 선별기준의 실효성을 분석함

○ (국내외 협력) 식약처, 환경부 등의 유관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위해물품 정보를 입수하며,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합동단속 등의 국제공조를 실시함

○ (법규준수도 평가)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에 대한 관세행정 공급망의 법규준수도를 평가, 측정하여 위험도별 제재 또는 혜택을 부여함

---

38)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39)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 특히 위험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마약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66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40)]

○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름

○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전자통관 위험관리 분야에서는 과거 신고정보와 적발정보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위험성이 높은 화물과 공급망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AI 기반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41)]

○ 딥러닝 기반 AI의 도입으로 위험성이 낮은 여행자나 화물은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고위험 대상에 검사를 집중함으로써 검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발률을 향상시키고 있음

○ 수백억건의 정상 화물 및 밀수 사례 학습을 통해 비정상 패턴을 자동 감지함으로써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지방세관 우회 반입 등 신종 수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 위주의 기존 위험선별 업무에 AI를 적용하여 빠르고 정밀한 탐지가 이루어지며, 의심 화물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의사결정으로 최종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결과 피드백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AI 신뢰도를 검증하고 있음

가) 여행자 휴대품[42)]

□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여행자가 소지하거나 위탁한 짐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인 절차로 의심이 있을 경우 간이 또는 정밀 신변검색으로 연계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휴대품 검사와 체강검사는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함

---

40) 「관세법」 제266조의2

41)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42)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검색일자: 2025. 6. 30.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여행자 휴대품이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등으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함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여행자가 입국 시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를 바탕으로 세관은 신고 내용 및 여행자의 여행 목적, 체류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신고내용에 특별한 의심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반입금지·제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신고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현품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로 신체검사, 면담 등도 병행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분함

□ 여행자휴대품 반출입 금지 물품은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이며, 반출입 제한 물품은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임

○ 이러한 반출입 제한 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림 Ⅲ-2]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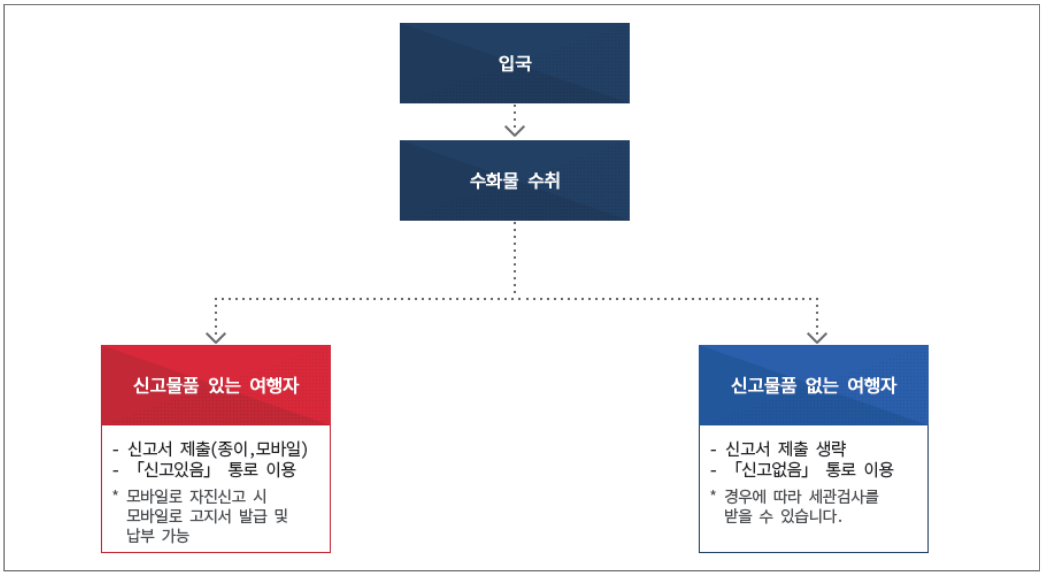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검색일자: 2025. 6. 30.

나) 화물(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기준)[43]

□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기준에 따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고, 별도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함

○ 다만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에 따름

○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지정된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음

○ 한편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

43)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음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또는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임

○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등임

○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상기 즉시검사화물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음

□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등임

○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우

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등임
○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 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등임
○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3) 선별시스템

가)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 우리나라 관세국경 위험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Intergrated Risk Managemet, IRM)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여행자, 화물 등 여러 채널의 정보와 관세행정 전반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함

나) 법무부 입국심사 전 여행자 세관검사

□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44)]
○ 이는 2024년 9월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알려짐
○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

44) 관세청,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보도자료, 2025. 1. 15.

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함

○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됨

다) 선별정보와 엑스레이 판독영상 동시구현

□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X-Ray) 검색라인에 구축하여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45]

○ 도입배경으로는 동시구현시스템이 없는 경우 세관 엑스레이(X-Ray) 판독직원은 해당 수하물의 우범정보 없이 판독해야 하므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한 적발 효율이 낮을 수 있음

라) 파괴검사 안전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함[46]

○ 휴대품 내부를 검사할 때 물품을 해체, 절단하는 등 파손이 필요한 경우 파괴검사를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자와 여행자가 강력한 마약성분(예: 펜타닐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하는 경우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음

---

45) 관세청,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보도자료, 2025. 1. 15.
46) 관세청,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보도자료, 2025. 1. 15.

○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의 특징으로 파장의 길이가 짧은 밀리미터파를 이용하여 3초 만에 전신을 스캔, 신변에 부착된 이물을 탐지하기 때문에 포괄적 이미지로 표출되어 인권 침해 소지가 없음

○ 종전에는 인천국제공항에 3대가 설치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 공항만에 12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전국 확대 2~3개월 만에 10여 건의 필로폰 및 코카인 등의 주요 마약류를 적발함

마) 우범항공편 및 우범국발 화물 등 위험군별 집중검사

□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함[47)]

○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 마약에 부착된 위치(GPS)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위치추적(GPS) 탐지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도입함

○ 또한 주요 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 단속 인프라를 확충함

□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함

○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를 부산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후방 산란방식 기능은 검사대상과 충돌하여 산란된 엑스(X)-선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마약 등 밀도가 낮은 유기물 탐지에 용이함

바) 법규준수도 관리 및 AEO

□ 법규준수도는 「관세법」 제255조의7 제1항에 따라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임[48)]

---

47) 관세청, 「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보도자료, 2025. 5. 8.
4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7. 4., https://www.

○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며, 법규준수도가 낮은 업체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

○ 즉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관리의 시작점이자 핵심으로 단순히 준수 여부를 넘어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성실 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됨

□ AEO 제도는 위험관리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관세청이 법규준수도·재무건전성·보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임[49)]

○ 인증 업체는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 국제 상호인정(MRA)에 따른 해외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규준수도 및 AEO 제도는 단순한 통관 혜택을 넘어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로서, 기업의 위험도를 차등화하여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관리 선별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능함

○ 선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적 자원을 고위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4) 신변검색 권한

□ 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1차적으로 밀리미터파 검색기 및 문형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신체 은닉 물품을 탐지하고, 위탁수하물 전량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물품 은닉 반입을 차단하고 있음[50)]

□ 검사 절차는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1차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간이 신변

---

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91888, 검색일자: 2025. 7. 5.

49)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 검색일자: 2025. 7. 5.

50) 관세청, 「관세청,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 2025. 7. 24

검색을 실시하며, 이후에도 상당한 의심이 있거나 추가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 신변검색을 진행할 수 있음

○ 1차: 비파괴 검색(검색기·탐지기, X-ray)

○ 2차: 간이 신변검색(1차 검사 시 이상 반응 발생 시)

○ 3차: 정밀 신변검색(추가 의심이 있는 경우)

□ 다만 「관세법」 제265조는 세관공무원에 의한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 및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 등 위해물품이 신체 내부에 은닉되어 반입되는 경우 직접적인 신변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음

□ 또한 「관세법」 제301조에는 신변검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복이나 휴대품 등 외부의 제한적 영역에 대한 수색에 국한되어 있음

○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으며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함[51]

□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여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신변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권한이 아닌 내부 지침에 근거한 조치에 불과함

○ 따라서 1차 장비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확인되더라도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검사 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 더욱이 신체검사는 의학적 처치나 장비 활용이 수반되는 직접적인 검사로서 영장 발부와 의료 전문가의 협조가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함

○ 이로 인해 현행 「관세법」상 마약류 등 고위험물품이 신체 내부에 은닉된 경우 직접적·강제적 대응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51) 「관세법」 제301조

## 나. 사후관리

□ 우범화물에 대한 위험관리제도는 국경 단계에서의 선별조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관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추적·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운영됨

○ 이를 통해 사전관리와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이고 완결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통관후 사후심사(Post Audit)를 통해 국경 단계에서 식별되지 못한 위험 요인을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유통이력 관리 제도와 벌칙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 통관후 유통이력관리제도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식별되지 못한 우범물품의 최종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 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벌칙 제도의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민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 1) 통관후 사후심사

□ 우리나라는 선통관 후심사 원칙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사후심사 결과를 위험관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음[52)]

○ 이를 통해 고위험 기업·품목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검사율·심사율을 상향함

○ 반대로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AEO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검사율을 축소함

5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2) 통관후 유통이력관리제도

가) 유통이력신고

□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53]

나) 기록 및 자료보관

□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54]

다) 유통이력 조사

□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55]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음[56]

---

53) 「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
54) 「관세법」 제240조의2 제2항
55) 「관세법」 제240조의3 제1항
56) 「관세법」 제240조의3 제2항

### 3) 벌칙

가) 수출입 금지물품에 대한 수출입죄[57]

□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따른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밀수입죄[58]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관세법」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 다만 제253조 제1항(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함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입항전 수입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다) 부정수입죄[59]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7) 「관세법」 제269조 제1항
58) 「관세법」 제269조 제1항
59)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라) 밀수품 취득죄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60]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61] 제2항(부정수입죄) 등에 해당하는 물품

□ 상기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62]

마) 미수범 등

□ 「관세법」 제271조에 따라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 미수범, 예비범 등을 모두 처벌함

○ (교사자 또는 방조자)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제1항에 따른 밀수입죄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함

○ (미수범) 제269조 제1항 밀수입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함

○ (예비범) 제269조 제1항 밀수입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

바) 징역과 벌금의 병과

□ 「관세법」 제269조 제1항 밀수입죄, 제271조 미수범, 제274조 밀수품 취득죄 등의 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63]

---

60) 「관세법」 제274조 제1항

61)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62) 「관세법」 제274조 제2항 내지 제3항

63) 「관세법」 제275조

사)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과태료

□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세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64]

○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65]

## 3. 소결

□ 우리나라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는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일정 수준의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법적 권한, 국내외 협력 체계, 기술 인프라,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한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우범화물의 선별과 차단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가. 체강검사 권한의 불명확성

□ 현행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에게 물품·휴대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체 내부에 은닉된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 권한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마약류와 같이 체내 은닉 형태로 반입되는 경우 장비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확인되더

64)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1호
65)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2호

라도 세관공무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 대상자가 반발할 경우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따라서 「관세법」에 검사 권한과 검사 범위·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장에서의 선별정보와 세관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정밀검사는 자칫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 참여나 미성년자 보호 지침 마련 등 보완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국내외 협력 체계의 미흡

□ 국내적으로는 위험관리와 연계된 각 부처·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상이하여 권한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시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음

□ 국제적으로는 해외 관세당국의 첩보 제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내 차원에서는 위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부처·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차원에서는 첩보 공유·합동 단속·공동 분석 등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보안 수준이 낮거나 반복 적발되는 출발국에 대해서는 사전 단계에서 강화된 검증·검사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다.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의 한계

□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능 향상과 안정

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성능 장치와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현행 「관세법」상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규정은 제한적이어서 위험평가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GPU 등 고성능 연산 장치와 같은 기술 인프라 확충과 함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현행 법·제도에서는 마약류 등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출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험분석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라. 사후관리 체계의 불충분성

□ 우리나라는 밀수입 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험물품을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재함

□ 또한 미수범·예비범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범 방지에 활용하는 체계는 미흡함

□ 이로 인해 고위험 화물과 반복 위반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어렵고, 단속 자원이 분산되어 고위험 분야에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에는 위험물품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사후관리와 위험예측 연계를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관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Ⅳ. 주요국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 1. 국제규범

### 가. 위험관리 개요

□ WCO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세관의 관리 절차 및 관행'으로 정의하고 있음[66]

○ 세관이 관리해야 할 위험(Risk)은 '통관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관세행정 측면에서 세수 확보, 적정한 통관, 불법무역 방지 등 세관당국의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음

□ 위험관리는 한정된 세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위험 화물과 운송수단을 선별·관리함으로써 무역 안전 확보와 원활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됨[67]

○ WCO와 WTO 모두 위험관리를 채택하여 세관 당국이 고위험 화물에 통관 및 국경통제를 집중하고 저위험 화물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

66) Sruti Vijayakumar, "Technology-centric and Data-Driven Customs Risk Management for Supply Chain Security," *World Customs Journal*, 19(1), 2025. 4. 30., pp. 38~62.

67) WCO, *WCO Customs Risk Management Compendium*, p. 2.

□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제물류 안전 확보를 위한 세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안 중심의 위험관리제도가 도입되었음[68]

○ 미국은 세관조직을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보호청(CBP)으로 통합·재편하였으며, 캐나다는 국경서비스청(CBSA)을 신설함

○ 또한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선적 24시간 룰(24-Hour Rule), 컨테이너 보안 협정(CSI), 사전 승객정보 제도(API/PNR), C-TPAT 제도 등을 시행함

□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WCO는 2005년 6월,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목적으로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이하 WCO SAFE Framework)」를 채택하였고, 이후 국제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해 왔음[69]

○ WCO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일반 부속서(General Annex) 제6장은 위험관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SAFE Framework는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자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나. WCO SAFE Framework[70]

### 1) 개요

□ WCO는 2002년 6월 「국제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SAFE Framework를 승인하였음

□ WCO SAFE Framework는 세계 무역의 안전과 촉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

68) 황윤주, 「관세국경에서의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한 일 비교연구」, 관세청, 2019. 3., p. 12.
69) WCO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 Chapter 6
70)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21.

고 있으며, 세관의 고위험 화물 식별·처리하는 능력 향상과 물품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물품의 통관 및 반출입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이러한 목적은 표준3 '검사 장비의 현대 기술'과 표준4 '위험관리 시스템'에서 강조됨

□ SAFE Framework의 핵심 프로그램은 ① 사전 물품 정보 제공 요건의 확장 ② 안전 관련 위험관리 수단의 강화 ③ 컨테이너 물품 검색을 위한 비파괴 검사 장비(Non-intrusive Inspection Equipment) 등 첨단기술의 활용 ④ AEO 제도 도입으로 구성됨[71]

□ 이 중 Pillar 1(세관 간 협력표준)은 고위험 화물 식별을 위해 사전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11의 표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표 Ⅳ-1〉 SAFE Framework Pillar 1(세관 간 협력표준)

| 구분 | 세부 내용 |
|---|---|
| 표준1 | 통합공급망 관리(ISCM)의 적용<br>- 사전 전자적 데이터 제출<br>- 세관당국 간 협력<br>- 봉인 무결성 프로그램의 적용<br>- UCR(Unique Cargo Reference)의 적용<br>- 세관 간 데이터 교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br>- CDM의 적용<br>-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구축 |
| 표준2 | 화물검사 권한의 부여 |
| 표준3 | 검사장비에 있어서 현대 기술의 적용 |
| 표준4 | 위험관리시스템의 확립 |
| 표준5 | 고위험 화물 또는 고위험 컨테이너의 정의 |
| 표준6 | 사전 전자정보의 요구 |
| 표준7 | 합동 표적화와 의사소통 |
| 표준8 | 세관통제 이행조치의 통계화 |
| 표준9 | 안전 평가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
| 표준10 | 고용인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 표준11 |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보안 검사 요구 |

71) Robert Ireland, "The Customs Supply Chain Security Paradigm and 9/11: Ten Years On and Beyond," WCO Research Paper No. 18, 2011. 9., pp. 3~9.;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12. 6.

### 2) 세부 내용

가) (표준1) 통합공급망 관리(ISCM)의 적용

□ 세관당국은 WCO의 통합공급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ISCM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관 통제절차를 따라야 하며, 구체적으로 통합된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전 전자정보를 제출

○ 세관당국 간 협력

○ 봉인 무결성 프로그램의 적용

○ 화물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인 UCR(Unique Cargo Reference)의 적용

- 세관당국은 WCO가 권고하는 UCR(Unique Cargo Reference)과 그에 수반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

○ 세관 간 데이터 교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 세관 간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한 CDM(Customs Data Model)의 적용

○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구축

나) (표준2) 화물검사 권한의 부여

□ 세관당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화물, 통과화물,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포함한 반출화물,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다) (표준3) 검사장비에 있어서 현대 기술의 적용

□ 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대 기술을 적용한 검사장비를 활용해야 하는데, 위험평가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할 때 비침입검사장비(Non-Intrusive Insepction, NII)와 방사능 검사장비를 사용해야 함

○ 이러한 검사 장비는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고위험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검색하기 위해 필요함

라) (표준4) 위험관리시스템의 확립

□ 세관당국은 잠재적 고위험 컨테이너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자동화해야 함

○ 이러한 시스템은 위험평가 요소를 검증하고 표적화(Targeting) 결정을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상의 관행(Best Practice)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함

□ 세관당국은 전략적 정보와 사전정보에 기초하여 위험을 선별할 수 있는 자동화된 선별시스템(Automated Selectivity System)을 개발·운영해야 함

○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선적 전에 적용하여 고위험 화물은 출항 전에 식별·차단하고, 저위험 화물은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표준5) 고위험 화물 또는 고위험 컨테이너의 정의

□ 고위험 화물과 컨테이너는 저위험 화물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첩보에 의해서 고위험 화물로 판명되거나, 위험평가에 의해 고위험이라고 평가된 경우를 말함

바) (표준6) 사전 전자정보의 요구

□ 세관당국은 적절한 위험평가를 위해 화물과 컨테이너 선적품에 대한 사전 전자정보를 요구해야 함

○ 사전 전자정보 전송은 정보교환기술(ICT)과 관련된 것으로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속서 표준 7.1., 6.9., 3.21., 3.18.은 세관활동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술의 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기술을 세관이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사) (표준7) 합동 표적화와 의사소통

□ 세관당국은 합동 표적화(Targeting)와 검색(screening)을 제공해야 하며, 표적화 기준의 표준화된 세트의 이용, 의사소통,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함

○ 위험정도가 높은 화물과 운송수단을 표적화(선정)하기 위해 WCO 표준화된 위험평가 서류, WCO 일반 고위험 식별인자(risk indicator) 서류, 위험 식별인자에 대한 세관공무원을 위한 WCO 핸드북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아) (표준8) 세관통제 이행조치의 통계화

□ 세관당국은 고위험 화물에 대한 검사 및 통제 조치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관통제 이행조치의 통계화를 수행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검사된 선적물품의 수량, 고위험 선적물품 중 검사 비율, 검사 방식별 분류(비파괴 검사, 물리적 검사, 병행 검사), 세관통관시간, 검사 결과에 따른 긍정·부정 사례 등을 포함한 통계보고서를 유지해야 함

자) (표준9) 안전 평가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 세관당국은 국제공급망에서 화물의 이동을 포함한 안전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속하게 확인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권한이 있는 기관과 함께 일해야 함

차) (표준10) 고용인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세관당국과 다른 권한이 있는 기관은 고용인의 청렴성에 있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청렴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항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함

카) (표준11)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보안 검사 요구

□ 세관당국은 수입되는 국가의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 수출되는 고위험 컨테이너와 화물에 대한 보안 검사를 수행해야 함

○ 세관당국은 위험평가를 적용할 때 어떤 통관항구로 가게 되어 있는 컨테이너나 화물이 고위험을 나타낸다는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선적전

에 컨테이너나 화물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수출국가의 세관당국에 요구해야 함

#### 3) 권고적 성격

□ WCO SAFE Framework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공급망 보안과 위험관리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지침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국가별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관리제도가 상이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위험관리 제도의 현황을 살펴볼 예정임

## 2. 미국

###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1) 조직[72]

□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CBP) 산하 국립타겟팅센터(National Targeting Center, NTC)에서 여행자 및 화물을 대상으로 정보 기반 실시간 분석과 타겟팅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식별·대응함

○ NTC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이 타겟팅 역량을 강화할수록 모든 국가의 안보가 강화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2001년 버지니아주 스털링(Sterling)에 설립됨

72) 미국 NTC, https://www.cbp.gov/frontline/cbp-national-targeting-center, 검색일자: 2025. 7. 17.

○ 이러한 원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178호의 취지에도 부합함
- 동 결의안은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해 회원국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탑승객 명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 또한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어느 회원국이라도 사전에 위협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요구함

□ NTC는 여행자(NTC-Passenger), 화물(NTC-Cargo), 네트워크 대응(Counter-Network), 조사(NTC-Investigations)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에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글로벌 협력을 수행하고 있음
○ NTC-Passenger 부서는 항공 여객 데이터 및 여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우범여행자를 식별하는 역할을 함
○ NTC-Cargo 부서는 수출입 화물 관련 운송 서류 및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며 위험 화물을 조기 식별하는 역할을 함
○ Counter-Network 부서는 테러 조직이나 범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패턴 분석 및 조직적인 위협을 탐지하는 역할을 함
○ NTC-Investigations 부서는 타겟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추적을 수행하며,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수행함

□ NTC의 주요 기능은 자동화 타겟팅 시스템 제공, 화물·여객 분석을 통한 실시간 대응, 마약 밀수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등임
○ (자동화 타켓팅 시스템 제공) CBP는 파트너 국가에 ATS-G(Automated Targeting System-Global)라는 자동화된 타겟팅 시스템을 제공하여, 항공 및 해상 화물과 여객 정보를 실시간 자동 분석하고 고위험 여행자 및 물품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화물 및 여객 실시간 분석) 화물부서(NTC-Cargo)는 오피오이드나 펜타닐 등의 불법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며, USPS(미국 우정국)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우편망과 연계하여 감시·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 협력 및 국제 공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해외 테러리스트·범죄인 규제 및 여객 정보 공유 의무화)에 따라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며, DEA(미국 마약단속국), FBI(미국 연방수사국) 등을 연방 수사기관과 각국 세관 및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합동 추적 및 단속 작전을 수행함

### 2) 현황

가) 관세국경 현황

□ CBP는 "CBP Strategy 2021-2026"을 통해 위험관리 기반 선별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 중임[73)]

○ Targeting and Vetting
○ Data and Analytics
○ Counter Network
○ Risk-Based Enforcement in Trade
○ Biometric Identification

□ (Targeting and Vetting) CBP는 NVC(National Vetting Center)를 통해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여행자 등의 위험도를 평가함

○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도구와 수사기관의 정보 등을 기반으로 입국 전 단계에서 고위험 인물을 식별함

□ (Data and Analytics) CBP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 예측 분석, 리스크 평가 정보의 통합, 분석 도구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음

○ 고급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데이터 연계 및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 요원과 의사결정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

---

73) CBP, *CBP Strategy 2021-2026*, 2020. 12.

□ (Counter Network) CBP는 마약, 무기 밀매 등 조직적 위협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식별 → 정보 수집 → 네트워크 분석 및 차단'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CBP의 고유 권한, 정보자산, 정보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 세계 단위의 사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사후 단속과도 연계함

□ (Risk-Based Enforcement in Trade) CBP는 글로벌 공급망 내의 불법 물품·위조 상품·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선별 기반의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국제우편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위험 분석을 수행함

○ 통합 수입정보, 위반 이력, 원산지 정보 등을 연계·분석하여 위험 점수를 부여함

○ "Section 321 Data Pilot", "Type 86 Test" 등 데이터 기반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함

□ (Biometric Identification) CBP는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활용하여 입국자 및 출국자를 실시간 식별하고 위험도를 분석함

○ 이를 통해 서류 위조 탐지, 출입국 기록 자동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COVID-19 이후 비접촉 프로세스로 전환됨

나) 적발 현황

□ 미국으로 반입되는 불법 마약류에 관한 데이터는 CBP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바, 단속 건수 및 압수 물량은 공항, 항만, 국경검문소 등의 주요 지점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집계되고 있음

○ CBP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연도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 선별 및 수사 지원, 정책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특히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 등 분석 도구와 연계되어 고위험 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함

□ CBP의 위해물품 압수 건수는 2025년 상반기 기준 5,611건, 압수 금액은 5,470달러로, 전체 압수 건수(3만 5,118건) 중 약 15.98%를 차지함

○ 2021년에는 압수 건수와 금액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급감하였고, 2023~2024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최근 5년 평균치에 근접함

〈표 Ⅳ-2〉 CBP의 위해물품 압수 현황(Import Safety Seizures)

| 구분 | 총 압수 건수[2] | 위해물품 압수 건수 | 압수 금액(USD) |
|---|---|---|---|
| 2020년 | 73,708 | 8,208 | 1,268만달러 |
| 2021년 | 83,402 | 9,145 | 1억 550만달러 |
| 2022년 | 46,111 | 4,484 | 6,240만달러 |
| 2023년 | 44,558 | 6,183 | 4,400만달러 |
| 2024년 | 48,444 | 6,888 | 6,060만달러 |
| 2025년[1] | 35,118 | 5,611 | 5,470만달러 |

주: 1) 2025 회계연도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2) 지적재산권(IPR), 수입 안전, 기타 무역 위반에 대한 압수 조치에는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PSC), 식품의약국(FDA),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 연방 기준을 위반한 장난감,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이 포함되며, CBP는 47개 연방 기관을 대신해 약 500개의 무역 법규를 집행, 합법적 무역 촉진, 수입세 징수, 유해 수입품과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경제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
자료: CBP, https://www.cbp.gov/newsroom/stats/trade?utm, 검색일자: 2025. 7. 21.

□ 불법 마약류의 경우 [그림 Ⅳ-1]과 같이 연도별 총 단속량은 2025년 6월 기준 420k lbs(약 190톤) 규모로, 마리화나, 메타암페타민, 코카인,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에서 증가세가 나타남

○ CBP는 약물 압수 통계와 관련하여 연도별·월별 단속 실적을 집계하고 있음

□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CBP는 2024년 기준 전체 여행자 약 4억 2천만명 중 4만 7,047명에 대해 전자기기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검색은 무작위 선별, 서류상의 문제, 법률 위반 의심 등 국경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2차 검색(Secondary Inspection)으로 이어짐[74]

○ CBP는 1차 심사 단계에서 별도 의심 사유 없이도 2차 검색으로 회부할 수 있으며, 전자기기 검색은 2차 검색 절차 중에서도 필수 절차는 아님

74) CBP, https://www.cbp.gov/travel/cbp-search-authority/border-search-electronic-devices?utm, 검색일자: 2025. 7. 16.

○ 전자기기 검색 대상자 4만 7,047명은 전체 여행자의 0.01% 미만, 2차 검색 대상자(약 1,266만명)의 약 0.3%에 해당함

[그림 Ⅳ-1] 월별 마약류 단속량 및 마약류 유형별 단속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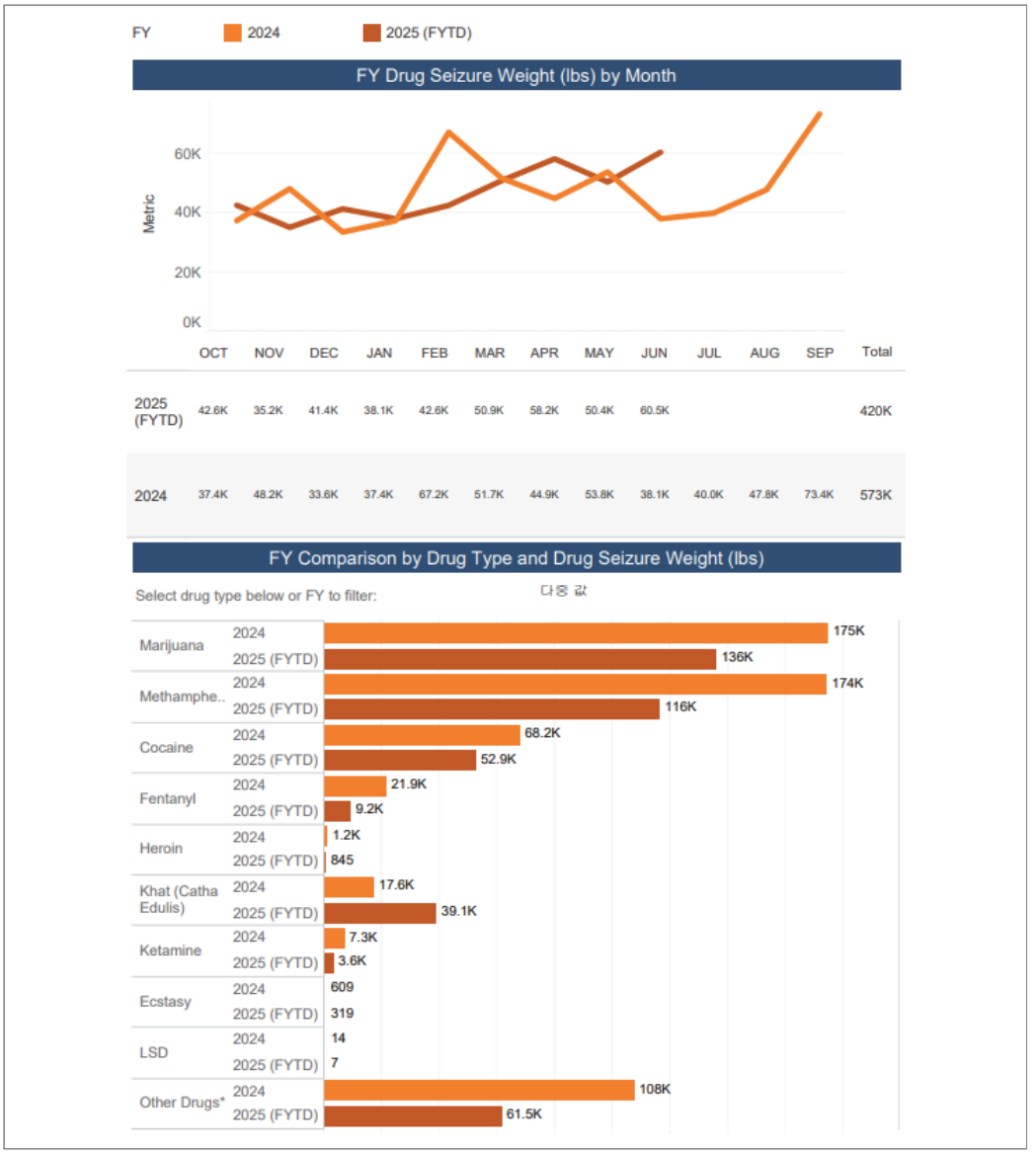


자료: CBP, https://www.cbp.gov/newsroom/stats/drug-seizure-statistics, 검색일자: 2025. 7. 16.

##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1) 수입 금지·제한 물품 관련 법령[75]

□ CBP는 어류·야생동물국(USFWS), 농무부(US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40개 이상의 연방 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있으며, 모든 입국 지점에서 공공의 안전과 건강,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CBP 및 관련 연방 기관들은 19 CFR Part 12 「특별 취급 품목(Special Classes of Merchandise)」에 근거하여 수입 금지·제한 품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판단함
  ○ 해당 규정은 「연방 관세법(19 U.S.C. § 1202 등)」과 각종 개별 법률(예: 「야생동식물 보호법」, 「식품의약품안전법」, 「총기규제법」 등)을 기반으로 함

□ 수입 금지 품목(Prohibited Items)은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반입 자체가 전면 금지된 품목으로 무조건 압수 대상이며, 수입 제한 품목(Restricted Items)은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허용이 가능한 품목을 말함
  ○ CBP가 명시한 수입 금지·제한이 적용되는 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에서 확인 가능함

#### 가) 수입 금지 품목(Prohibited Items)

□ CBP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가 이익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노동자와 어린이에게 유해한 제품,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물·식물 관련 물품 등이 포함됨
  ○ 위험한 장난감이란 어린이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나 유해 물

75) CBP,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검색일자: 2025. 7. 18.

질이 포함된 장난감을 말함

○ 충돌 안전성이 낮은 자동차란 차량 충돌 시 탑승자 보호 기능이 미흡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말함

○ 부시미트(Bush meat)란 위생적·생태학적 위험이 있는 야생동물의 고기를 말함

○ 불법 약물이란 국내 반입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불법 약물(예: 로히프놀(Rohypnol)을 말함

○ 불법 복제품이란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제품을 말함

○ 위조 화폐 및 문서란 가짜 화폐, 위조 여권, 허위 운전면허증 등 법적 효력을 가장한 위조 문서류를 말함

○ 유해 화학물질 및 독성 물질이란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물질(예: 특정 농약, 독성 화합물)을 말함

나) 수입 제한 품목

□ CBP는 연방기관의 특별 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해당 기관의 엄격한 검토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로 총기류, 특정 과일 및 채소, 동물성 제품, 동물 부산물, 일부 동물 등이 포함됨

○ 총기류 및 탄약류는 반입 전 ATF(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의 허가가 필요함

○ 일부 과일 및 채소는 해충이나 질병 전파 우려로 제한됨

○ 동물 제품 및 부산물은 특정 육류, 유제품, 가죽 제품 등이 해당됨

○ 일부 동물은 멸종 위기종 등 보호 대상 동물이 해당됨

○ 생물학적 시료는 세포, 항체, 백신 등 등 생물학적 소재가 해당됨

○ 토양 및 모래는 병원균 전파 우려로 반입이 제한됨

### 2) 선별기준

□ CBP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 수하물 및 화물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76]

○ 이러한 권한에 따라 세관직원은 여행자의 의복, 수하물, 전자기기 등 모든 소지품에 대해 포괄적인 검색을 실시함

○ 이러한 수색은 영장이나 개별적 의심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미국 「헌법」 제4조의 국경 수색 예외(Border Search Exception) 원칙에 근거함

□ 또한 CBP는 선박, 차량, 항공기 및 기타 운송수단을 정지시키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77]

○ 이러한 권한은 미국 영해 및 국경 내에서 행사되며, 밀수, 탈세, 또는 세관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이 가능함.

○ 운송수단의 정지 또는 수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 가) ISF(Importer Security Filing)

□ 미국은 고위험 화물이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크 화물을 제외한 모든 해상화물에 대해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규정(19 CFR §149.3)에 명시된 ISF 정보를 CBP 승인 전자 데이터 교환(EDI)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8]

○ 다만 해외 항구에서 적재될 벌크 화물(Bulk cargo)에 대해 19 CFR § 4.7(b)(2)에서 요구하는 24시간 사전 화물신고(cargo declaration)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ISF 사전 제출 의무도 면제됨[79]

---

76) 19 U.S.C. § 1582
77) 19 U.S.C. § 1581
78) 19 CFR § 149.2
79) 19 CFR § 149.4(a)

□ ISF 정보는 선적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정보는 최대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 제출 가능함

○ 정보 제출 이후 미국 도착 전에 정보가 변경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착 전에 즉시 수정해야 함[80]

○ 또한 해당 화물이 더 이상 수입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ISF를 철회하고 CBP에 철회 사유를 전송해야 함[81]

나) CSI의 고위험 컨테이너 판정 기준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따른 고위험 컨테이너(High-Risk Container)의 판정은 전송정보(Transmission Information)와 전략정보(Intelligence Information)에 근거함

□ 전송정보(Transmission Information)는 컨테이너 선적 전에 수집되는 화물 관련 전자데이터로, ICS(Integrated Cargo System) 또는 AMS(Automated Manifest System)를 통해 CBP에 사전 전송되며,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에 의해 자동 분석되어 위험도 평가에 활용됨[82]

○ CBP는 다음의 주요 전송정보와 함께 ATS에서 과거 적발 사례, 운송 패턴, 거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 여부를 탐지하고 위험 점수(Risk Score)를 부여함

- 선하증권 정보
- 송하인 및 수하인, 선적항 및 양륙항
- 화물내역, HS Code, 수량 및 중량
- 컨테이너 번호(Container Number)
- 운송 수단 정보(Vessel Name, Voyage Number 등)
- CTPAT 참여 여부 등

---

80) 19 CFR § 149.4(d)
81) 19 CFR § 149.4(e)
82) 19 CFR § 4.7a & 19 CFR § 149.2

□ 전략정보(Intelligence Information)는 미국 내 수사기관, 정보기관 또는 국제 협력 파트너로부터 수집된 비공개 정보 및 첩보(Intelligence)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컨테이너 또는 발송 경로에 대한 고위험 컨테이너 선별에 활용됨[83]

○ 다음의 주요 전략정보는 NTC(National Targeting Center)와 ATS를 통해 통합 분석되며, 전송정보 분석을 보완하고 수작업 심사 대상 컨테이너 선정에도 기여함[84]

- 테러 연계 위험국 또는 제재 대상 국가에서의 선적
- 과거 밀수 적발 이력이 있는 기업, 선박 또는 운송 경로
- 선하증권 위조 및 정보 불일치 사례
- 마약류, 무기 등 고위험 품목 관련 경고 정보
- 동맹국 또는 국제기관 간 정보 공유 결과

다) 전자기기 검색 대상 기준[85]

□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자는 CBP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관련 지침에 따른 여행객의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기타 전자기기를 수색할 수 있음

□ 전자기기 국경수색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파악하고 「미국 이민법」상 입국 허가 여부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범죄를 식별·단속하는 데 활용됨

○ 테러 활동 및 국가안보 위협 관련 범죄
○ 아동 착취 및 인신매매
○ 마약 및 불법 의약품 밀수
○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금융 범죄 등

□ 전자기기 국경수색 지침(CBP DIRECTIVE NO. 3340-049A)은 CBP가 입국 및 출국 시 다음과 같은 검색 대상이 되는 전자기기에 포함된 정보를 검색·검토·보관·공유

83) CBP, *CBP CSI Fact Sheet*, 2011; GAO, *CBP uses ATS*, 2013, p. 15 참고하여 작성
84) DHS, *Cargo Targeting and Examinations*, 2010. 1.
85) 19 CFR § 162.6

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과 표준 운영 절차를 제공함

○ 컴퓨터, 태블릿 등

○ 이동식 저장매체,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 휴대전화, 카메라

○ 음악 및 기타 미디어 플레이어

○ 기타 통신·전자·디지털 기기 등

### 3) 선별시스템

#### 가) ATS[86]

□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는 여행자, 화물, 운송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 및 정보기관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수집·연계하여,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선별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임

○ 분석요소는 여권·이름·생년월일·국적·비자 유형·범죄기록·테러 연루 가능성 등 개인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항공 좌석, 기내메뉴 선택, 예약 생성·취소 이력(APIS/PNR) 등을 포함한 행동·패턴 정보 등이 있음

□ ATS는 여러 모듈이 상호 연계하여 작동하며, 여행자, 화물, 운송수단 전반에 걸쳐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형성함

○ ATS-P: 항공, 해상, 철도 등 여객(Passenger) 정보를 분석하여 고위험 승객을 사전 선별하며, APIS, PNR 데이터를 활용함

○ ATS-Inbound: 수입 화물의 선적 이력, 운송 경로, 발신자·수신자 등을 분석하여 위험 물품이나 밀수를 감지함

○ ATS-Outbound: 수출 화물을 분석하여 밀수출 또는 제재 대상 국가로의 반출을 감시함

---

86) 미국 국토안보부(DHS), https://www.dhs.gov/publication/automated-targeting-system-ats-update, 검색일자: 2025. 7. 18.

○ ATS-Land: 육로 국경 통과 차량 및 사람(캐나다·멕시코 국경 등)의 출입국 기록, 차량 정보 등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판단함

○ ATS-TAP(Trend Analysis Platform): 대량의 여행·통관 데이터를 통해 패턴 및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고, 새로운 위험 규칙을 개발하는 데 사용함

○ ATS-I(International): 해외 관세청 협업용 모듈로 GTAS와 연계되어 국제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지원함

□ ATS는 APIS(Passenger API) 및 PNR(Passenger Name Record) 데이터를 TECS 및 ATS로 전달한 후, 여러 법 집행 DB와 비교·분석하고 위험도 기준을 적용하여 고위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이 이루어짐

○ 위험 값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차 검색(Secondary Inspection) 대상을 구성함

나) CSI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중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는 화물을 해외 출발 항구에서 사전 선별·검사하여 미국 도착 전 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87]

○ 이를 위해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목록(manifest)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 24시간 전까지 CBP에 전자 보고해야 함[88]

□ 동 제도는 9·11 테러 이후 2002년 1월 출범하였으며, CBP는 약 20개 외국 항구에 요원을 파견하여 위험 화물을 사전 식별·검사하도록 함[89]

---

87) 6 U.S.C. § 945

88) 19 CFR Part 4.7

89)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examination, 검색일자: 2025. 7. 18.

□ 현재 전 세계 32개국, 61개 항만에서 CSI 검사를 운영 중이며,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의 약 80% 이상이 CSI 선별을 거침[90]

○ CSI 요원은 외국 항만 당국과 공동으로 위험 기준(risk criteria)을 수립하고, NTC-C(국립타켓팅센터)와 협업하여 원격 선별 및 조사를 수행함

○ 또한 고위험 컨테이너를 식별·검사하기 위해 비접촉 스캔 장비, 방사선 감지기 등의 첨단기술과 자동화 선별 도구(Automated Targeting Tools)를 활용함

□ CSI의 세 가지 핵심요소는 ① 고위험 컨테이너 식별 ② 선적 전 사전 선별 및 평가 ③ 기술을 활용한 신속 검사 등임[91]

○ (고위험 컨테이너 식별) CBP는 사전 정보(Advance Information)와 전략 정보(Strategic Intelligence)를 활용하여 테러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를 식별함

○ (선적 전 사전 선별 및 평가) 출발항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검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X-ray, 감마선 스캐너, 방사선 탐지기 등 비접촉 기술이 활용됨

○ (기술을 활용한 신속 검사) 고위험 컨테이너는 대형 X-ray 장비, 감마선 스캐너, 방사선 탐지기 등을 통해 무역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신속히 검사됨

다) 첨단기술의 활용

□ CBP는 불법 마약, 무기, 대량살상무기, 기타 밀수품과 같은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비침입검사장비(Non-Intrusive Insepction, NII)를 활용함[92]

○ CBP가 사용하는 비침입 기술은 다음의 장비들을 포함하며, 물리적으로 화물을 열거나 해체하지 않고도 차량, 컨테이너, 가방 내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탐지율이 높고 검사 속도도 빠름

---

90) CBP, https://www.cbp.gov/about/history/cbp-20-20-establishment/container-security-initiative-launched-protect-global-trade-enhance-border-security, 검색일자: 2025. 7. 18.

91)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si/csi-brief, 검색일자: 2025. 7. 18.

92) CBP, https://www.cbp.gov/newsroom/local-media-release/new-non-intrusive-inspection-systems-be-added-bridge-americas-port, 검색일자: 2025. 7. 18.

- 차량 X-ray: 트럭, 컨테이너 차량 내부를 비침입적으로 검사
- 휴대용 X-ray: 수하물이나 의심 가방에 사용
- 수하물 X-ray: 공항, 항만 등에서 수하물 탐지
- 화학 물질 예비 식별 장비: 의심 물질이 마약인지 폭발물인지 빠르게 분석
- 밀도 측정기(Density Meter): 물체의 밀도를 분석하여 숨겨진 공간이나 물품 탐지

□ 방사선 감지 장비(Radiation Portal Monitors, RPM)는 사람, 차량, 화물 등이 통과할 때 비접촉식 방식으로 방사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비로 주로 항구, 공항, 국경, 화물 터미널, 우편 시설 등에 설치됨[93]

○ 주로 핵무기 및 방사능 위협물(Dirty Bomb)의 밀반입 차단, 불법 방사성 물질 탐지 및 차단, 국내 테러 방지 및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 대응, 수입 화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CBP는 미국 내 모든 해상 컨테이너, 육로 차량, 우편·항공 화물 등을 대상으로 RPM을 활용한 100%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사례로는 2024년 미국 볼티모어 항만에서 RPM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둠[94]

- 핵·방사성 물질의 효과적인 차단 기능 유지
- 현장 인력의 운영 부담 완화
- 물류 흐름의 지연 최소화 및 처리 효율 극대화

○ 해당 시스템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CWMD(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ffice) 및 CBP 지휘센터(Command Center)에서 원격으로 운영되며, 현장 상주 인력 없이도 전환 검사(secondary inspection)를 효과적으로 수행함[95]

---

93) 미국 국토안보부(DHS), https://www.dhs.gov/publication/dhscbppia-031-radiation-detection-systems, 검색일자: 2025. 7. 18.
94) 미국 국토안보부(DHS), https://www.dhs.gov/archive/news/2024/12/12/advancing-security-port-baltimore, 검색일자: 2025. 7. 18.
95) 미국 국토안보부(DHS), https://www.dhs.gov/archive/news/2024/12/12/advancing-security-port-baltimore, 검색일자: 2025. 7. 18.

□ CBP는 공항, 해상, 육상에서의 출입국 시점에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T)을 이용한 생체 인식 시스템을 운영 중임[96]

○ 이러한 시스템은 탑승자 및 선박 승무원 정보를 출발 전 사전 수집하여 출항 전 또는 입국 전 단계에서 화물 및 인원의 위험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이를 통해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인원이나, 과거 밀수 이력이 있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련된 화물에 대해 선제적 타겟팅 검사를 가능하게 함

라) C-TPAT 위험기반 공급망 평가 시스템[97]

□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CBP가 공급망 전반의 테러 위협 예방과 무역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민관 협력 자율 보안 프로그램임

○ 공급망 전 과정에 존재할 수 있는 테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발적인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CBP의 위험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보완함으로써 미국행 화물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둠

□ 2024년 기준, 1만 1,500개 이상의 기업이 C-TPAT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공급망 보안에 대한 자체 평가(Self-Assessment) 및 보안 프로파일(Security Profile)을 제출할 것

○ CBP가 제시한 공급망 보안 기준(Security Criteria)을 준수할 것

○ 공급망 각 단계에 대한 위험 기반 분석 및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 CBP와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현장 검증(Validation)에 협력할 것

---

96) CBP, https://www.cbp.gov/about/congressional-resources/testimony/statement-record-assessing-cbps-use-facial-recognition-technology, 검색일자: 2025. 7. 18.

97)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 검색일자: 2025. 7. 18.

□ C-TPAT 회원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받음

○ 화물 검사 비율 축소(Reduced Inspections)

○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속도 향상(Expedited Processing)

○ CBP 전담 연락 창구 제공

○ 자체 보안 리스크 분석에 대한 CBP의 피드백 제공

○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상호 혜택

#### 4) 신변검색 권한

가) 미국「헌법」제4조와 국경 수색 예외[98]

□ 미국「수정헌법」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장은 합리적 사유(probable cause)와 선서(Oath or affirmation)에 근거해야만 발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탈의 수색(Strip search)과 신체 내부 수색(Body-cavity search)은 합리성(Reasonableness)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단순한 물품 수색과는 구별하고 있음

□ 다만 국경 수색 예외(border search exception) 원칙에 따라 국경 또는 그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일정 조건에 따라 개별적 의심이나 영장 없이도 제한적 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나) CBP의 정책 및 법률 근거

□ 앞서 언급하였듯 CBP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 수하물 및 화물에 대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99]

---

98)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

□ 이에 따라 세관직원은 모든 여행자의 의복, 수하물, 전자기기 등 모든 소지품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포괄적인 수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국경 수색 예외(Border Search Exception) 원칙에 근거함

□ 또한 CBP가 선박, 차량, 항공기, 기타 장소 또는 개인 등을 적법하게 수색하여 확보한 물품, 문서, 전자 데이터 등은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100]

다) ICE의 내부 정책 기준[101]

□ CBP가 입국 단계에서 「19 U.S.C. § 1582」 및 국경 수색 예외 원칙에 따라 영장 없이 광범위한 수색을 수행하고, 이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102]으로 이송되면 「National Detention Standards 2019」 제2.7조에 따라 수색 유형별로 절차적 요건과 인권 보호 기준을 적용함

□ ICE의 신체 수색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 수색(Pat-down search), 탈의 수색(Strip search), 신체 내부 수색(Body-cavity search)으로 구분됨

○ 신체 접촉 수색(Pat-down search)은 외부 복장 위로 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탐색하는 방식의 수색으로 민감 부위(가슴, 음모 부위, 항문 주변 등)의 접촉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신체 내부 장기 등은 별도의 수색 절차에 따라 규율됨

○ 탈의 수색(Strip search)은 수색 대상자의 의복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수색으로 정당한 이유(reasonable suspicion)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상급 감독관의 사전 승인 및 문서화(예: Form G-1025)가 필수임

○ 신체 내부 수색(Body-cavity search)은 신체 내부(질, 직장 등)를 탐색하는 방식의

99) 19 U.S.C. § 1582
100) 19 C.F.R. § 162.6
101) ICE, https://www.ice.gov/detain/detention-management/2019, 검색일자: 2025. 7. 24.
102)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추방과 마약·밀수·자금세탁 등 국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국경 최일선에서 통관·검사·출입국 심사를 수행하는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달리, ICE는 국경 후방에서 수사·집행을 전담함

수색으로 의료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시행 전 정당한 이유(reasonable suspicion)와 시설 관리자 승인, 수색 사실에 대한 기록 작성이 필수임

## 다. 사후관리

### 1) Focused Assessment(FA) 제도[103]

□ CBP는 Focused Assessment(이하 "FA") 제도를 통해 위험기반 또는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수입자의 내부통제 시스템, 법령 준수 여부, 위험요소 등을 사후 심사함

○ 심사 대상은 수입자의 내부통제 시스템, 법령 준수 여부, 위험요소 등이 포함됨

○ 반복 위반 가능성이 있는 수입자를 사후 추적할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무기류, 위험물 등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계하여 형사수사로 전환될 수 있음

○ 한편 FA 통과 업체는 ISA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체 평가를 통해 사후심사 면제 또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104]

□ FA 제도는 Pre-Assessment Survey(PAS), Assessment Compliance Testing(ACT), Follow-Up Audit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수입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함

○ Pre-Assessment Survey(PAS)는 기업의 내부 규정 준수 관행을 평가하고, 조직 구조, 책임 체계 등을 문서 형태로 조사함

○ Assessment Compliance Testing(ACT)은 PAS에서 식별된 고위험 거래 항목을 대상으로 문서검토, 분류·가치·원산지 등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내역을 검증함

○ Follow-Up Audit은 필요한 경우 후속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

---

103) CBP,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audits/focused-assessment, 검색일자: 2025. 7. 25.

104)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 6., p. 2.

### 2) 벌칙

□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미국 연방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절차를 통해 집행되며,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미국 「연방법」 제18편(Title 18) 제27장(Chapter 27) Part I에서 통관(customs)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세법」 위반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은 징역형(imprisonment)과 벌금형(fine)이며, 벌금형은 「18 US Code § 3571」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가)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 통관[105]

□ 다음과 같이 수입물품을 허위 또는 사기성 문서나 진술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하거나 반입을 시도한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사기 또는 허위 문서를 통한 수입 행위
  - 사기성 또는 허위의 송장(Invoice), 신고서(Declaration), 진술서(Affidavit), 서한(Letter), 문서(Paper)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미국 상업계(commerce of the United States)로 반입 또는 반입을 시도한 경우

○ 허위의 문서상 또는 구두상 진술을 통해 상품을 미국으로 반입 또는 반입을 시도한 경우

○ 사기성 또는 허위의 행위, 수단, 방식(appliance)을 통해 상품을 미국으로 반입하거나 반입을 시도한 경우

○ 진위를 신뢰할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경우

○ 고의적 행위 또는 누락으로 미국의 관세 수취를 방해한 경우
  - 사기성 송장·신고서·문서 등에 언급된 상품 또는 고의적 행위나 누락에 영향을 받은 상품에 대해 미국이 합법적으로 수취해야 할 관세를 박탈하거나, 박탈 가능성을 발생시킨 경우

105) 18 U.S.C. §542

□ 이들 조항은 위해물품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이를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해물품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반입할 경우 이들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음

나) 미국으로 물품 밀수[106]

□ 다음과 같이 미국으로 고의적·의도적으로 밀수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미국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로 발급되어야 하는 송장 없이 상품을 미국으로 의도적·고의적으로 밀반입하거나 그러한 시도하는 경우

○ 허위, 위조 또는 사기성 송장, 그 밖의 서류·문서로 세관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

○ 사기를 목적으로 또는 위법의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가져오는 경우

○ 위법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었거나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상품을 수령하거나 은닉·구매·판매 또는 어떤 형태로든 운송·은닉·판매를 조장하는 경우

106) 18 U.S.C. §545

# 3. 일본

##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1) 조직[107]

□ 일본은 우리나라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일본 관세국 산하 NITC(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를 두고 있음

□ 일본 관세국은 재무성 내부조직으로 총무과, 관리과, 관세과, 감시과, 업무과 및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정원 199명 규모로 관세 관련 법령 및 제도 전반을 총괄함
  ○ 또한 재무성 직속기관으로 세관연수소 및 관세중앙분석소를 운영하고 있음

□ 재무성 관세국 조직 중 우범물품의 감시 및 단속과 관련된 주요 부서는 감시과, 업무과, 조사과 등으로,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함
  ○ 감시과는 관세법규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행자 단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업무과는 화물의 수출입 허가, 승인과 수출입 화물의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조사과는 수출입화물의 조사, 검사에 관한 업무와 정보에 관한 외국세관당국 등과 연락,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전국적 차원의 정보센터와 세관 단위의 정보관리관(ITO)을 각각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정보센터는 도쿄세관 소속으로 세관정보감리관(Director for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 국제정보센터실(International Intelligence Office), 정보분석실(Intelligence Analysis Office) 및 총괄정보관리관(National Intelligence and

107)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k-kikou.htm, 검색일자: 2025. 7. 7.

Targeting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관의 정보관리관(Intelligence and Targeting Office, ITO)은 전국 9개 세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관 차원의 정보관리의 일원화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 현황

가) 관세국경 현황

□ 일본은 국제공급망의 안전확보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WCO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시한 통합위험관리, AEO 제도 등을 조기에 도입하였음[108)]

□ 관세국경 위험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스마트 세관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2022」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와 밀수 수법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대응책은 다음과 같음[109)]

○ 공항만 세관에 첨단기기 도입 확대

- 각 공항·항만 물류의 원활화, 업무 효율화 및 철저한 국경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 활용 기기를 적극 도입하고, 물품검사의 디지털화 추진

○ 세관 검사장 디지털화 추진

- 급증하는 수입화물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이행 필요에 따라 첨단 기술 활용 기기 도입과 검사의 디지털화 추진

○ AI X-ray 검사 및 물질 식별기술 활용 부정약물 탐지기법 개발

- X-ray 화상 해석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AI 및 물질 식별기술을 활용하여 부정 약물의 자동 탐지 기능 개발 필요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세관 검사 현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부정약물 탐지기법 조사연구

○ 스마트 글라스 활용·수중 드론의 활용 가능성 검증

- 검사 직원과 원격지의 심사 직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

108) 황윤주, 「관세국경에서의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한 일 비교연구」, 관세청, 2019. 3.
109)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smart/index.htm, 검색일자: 2025. 7. 7.

스를 활용하여 화물을 확인, 심사·검사의 효율화하고 수중드론의 세관 감시 단속 활용 가능성을 검토

나) 적발 현황[110]

□ 일본 관세당국은 우범물품 적발 사건을 ① 불법 약물 ② 금지금 ③ 지적재산권 ④ 기타 물품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음

○ 불법 약물은 각성제, 대마, 아편, 마약(헤로인, 코카인, MDMA 등), 향정신약 및 지정 약물을 말함

□ 올해 2월 일본 재무성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 및 공항·항만 등에서 우범물품의 밀수와 관련한 불법 약물 단속·적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압수량이 2년 연속 2톤을 초과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불법 약물) 전체 적발건수는 1,020건(전년 대비 24% 증가)으로 증가했으며, 압수량은 약 2,579kg(전년 대비 6% 감소)으로 감소함

○ 내각성제(필로폰) 적발건수는 139건(전년 대비 53% 감소), 압수량은 1,761kg(전년 대비 22% 감소)으로 감소했으며, 압수한 건은 약 5,870만회분으로 약 1,162억 엔에 상당함

- 주요 밀수 경로는 해상 화물로 약 1,015kg(7% 증가)을 차지함
- 주요 유입 지역은 건수 기준 북미 40%, 양수량 기준 중남미 56%를 차지함

○ 대마의 적발건수는 390건(전년 대비 2.9배 증가), 압수량은 약 344kg(전년 대비 약 2배 증가)으로 증가했으며 적발건수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주요 유입 국가는 태국(47%), 미국(26%), 베트남(10%) 순임

○ 기타 마약류(코카인, MDMA 등)의 적발건수는 322건(전년 대비 34% 증가), 압수

110) 일본 재무성, 「令和6年の全国の税関における関税法違反事件の取締り状況(全体版)」;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mitsuyu/cy2024/index.htm, 검색일자: 2025. 7. 8. 참고하여 저자 작성

량은 약 464kg(전년 대비 49% 증가), 정제형은 약 67천정(전년 대비 37% 증가)으로 증가해 적발건수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지정 약물의 적발건수는 163건(전년 대비 14% 증가)으로 증가했으며, 압수량은 약 10kg(전년 대비 22% 감소)으로 감소함

[그림 Ⅳ-2] 불법 약물의 적발건수와 압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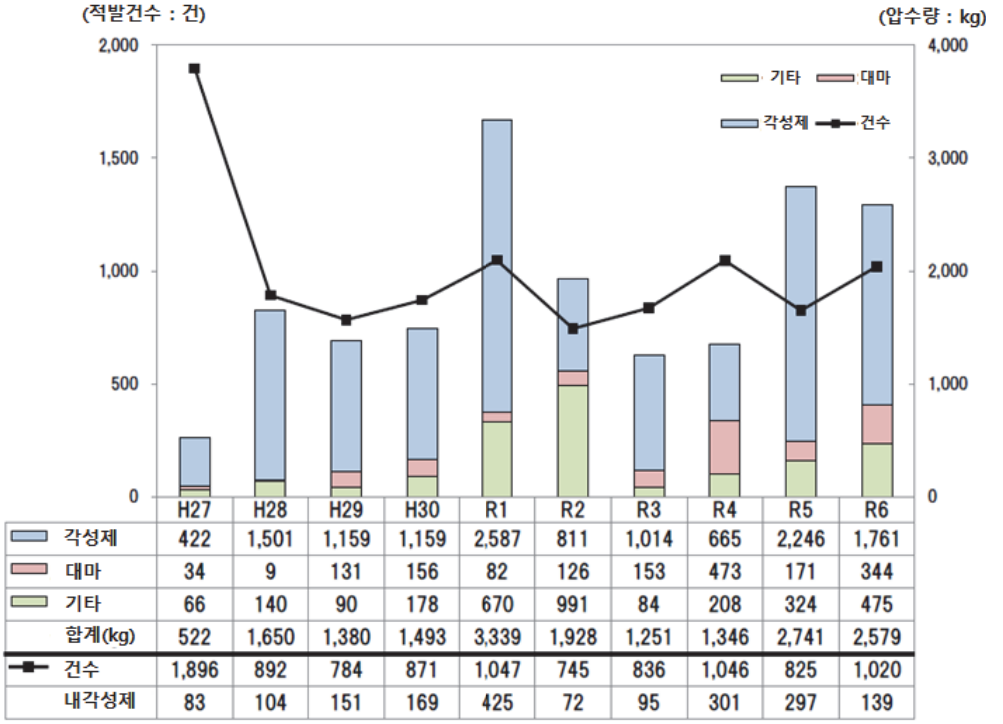


| | H27 | H28 | H29 | H30 | R1 | R2 | R3 | R4 | R5 | R6 |
|---|---|---|---|---|---|---|---|---|---|---|
| 각성제 | 422 | 1,501 | 1,159 | 1,159 | 2,587 | 811 | 1,014 | 665 | 2,246 | 1,761 |
| 대마 | 34 | 9 | 131 | 156 | 82 | 126 | 153 | 473 | 171 | 344 |
| 기타 | 66 | 140 | 90 | 178 | 670 | 991 | 84 | 208 | 324 | 475 |
| 합계(kg) | 522 | 1,650 | 1,380 | 1,493 | 3,339 | 1,928 | 1,251 | 1,346 | 2,741 | 2,579 |
| 건수 | 1,896 | 892 | 784 | 871 | 1,047 | 745 | 836 | 1,046 | 825 | 1,020 |
| 내각성제 | 83 | 104 | 151 | 169 | 425 | 72 | 95 | 301 | 297 | 139 |

(주)
- '령(令)원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
- 2024년의 수치는 잠정치임.
- 대마란, 2024년 12월 12일에 시행된 대마취체법 및 대마취제법, 향정신성의약품취체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한, 대마 및 대마를 원료로 한 THC 함유 제품을 말함. THC 함유 제품이란, 대마의 유효 성분인 THC류(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류)를 포함하는 액체나 고형 제제를 말함.
- 기타는 아편, 마약(헤로인, 코카인,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합성 의약품을 말함.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の全国の税関における関税法違反事件の取締り状況(全体版)」, p. 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 (금지금) 적발건수는 493건(전년 대비 2.3배 증가), 압수량은 약 1,218kg(전년 대비 약 4배 증가)으로 증가함

○ 대부분 항공기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밀수로 이는 전체의 약 87%를 차지함

○ 주요 반입 국가는 홍콩으로 281건, 전체의 약 57%를 차지함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밀수입 사건은 10건임

○ CITES 관련 목재 밀수 건수는 2건이며, 수상오토바이·도난차량 등 불법 수출은 5건, 위조 유가증권의 밀수 건수는 1건임

##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1) 수입금지·제한 물품(법령)

□ 일본 세관은 관세국경에서의 세관 단속 목적을 공익보호, 국민 건강·안전 위험 제거, 조직범죄 가담의 방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타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국경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서는 “수출입 되어서는 안 되는 화물”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 중 일본의 산업, 경제, 보험, 위생, 공안 및 풍속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111)]

○ 이는 화물의 수입에 관한 허가, 승인 그 외의 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제한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수입금지물품은 수출금지물품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마약, 불법의약품, 무기류, 멸종위기 동물 등으로 〈표 Ⅳ-3〉과 같음

111) 일본 재무성, https://www.customs.go.jp/mizugiwa/kinshi.htm, 검색일자: 2025. 7. 4.

〈표 Ⅳ-3〉 일본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

| 구분 | 내용 |
|---|---|
| 제1호 | 마약 및 향정신약, 대마, 아편, 양귀비 및 각성제(「각성제단속법」에서 말하는 각성제 원료를 포함한다), 아편흡연도구. 다만, 정부가 수입하는 것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자가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을 제외 |
| 제1의2호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제2조 제15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지정약물[같은 법 제76조의4(제조 등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을 제외 |
| 제2호 | 권총, 소총, 기관총 및 포와 이들 총포탄 및 권총부품.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자가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을 제외 |
| 제3호 | 폭발물[「폭발물단속벌칙」(1884년 태정관 포고 제32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폭발물을 말하고, 전호 및 다음 호에 열거하는 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자가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을 제외 |
| 제4호 | 화약류[「화약류단속법」(1950년 법률 제149호) 제2조 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화약류를 말하고, 제2호에 열거하는 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자가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을 제외 |
| 제5호 |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5년 법률 제65호) 제2조 제3항(정의 등)에서 규정하는 특정물질. 다만, 조약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자가 그 조약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을 제외 |
| 제5의2호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 제6조 제20항(정의 등)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등 및 같은 조 제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및 같은 조 제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자가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을 제외 |
| 제6호 | 화폐, 지폐나 은행권, 인지나 우표(우표 이외의 우편에 관한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및 모조품[인지의 모조품인 경우에는 「인지 등 모조단속법」(1947년 법률 제189호)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표의 모조품인 경우에는 「우표류 모조 등 단속법」(1972년 법률 제50호)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정하게 작성된 대금이나 요금지급용 또는 예금저금 인출용 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카드(원료가 되는 카드를 포함한다) |
| 제7호 | 공공의 안전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도화, 조각물 및 그 밖의 물품(다음 호에 열거하는 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제8호 | 아동포르노[「아동매춘,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동포르노를 말한다] |
| 제9호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
| 제10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정의) 열거하는 행위[이들 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적용제외 등)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조성하는 물품 |

자료: 일본 「관세법」 제69조의11(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물)

### 3) 선별기준

□ 일본「관세법」제105조는 수입물품에 대해 질문, 조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세관직원의 직무집행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관직원은「관세법」,「관세정률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112)]

○ 외국무역선 등, 이외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외국화물을 적재한 것, 이들에 적재된 화물, 보세지역에 있거나 보세지역에 출입하는 화물 또는 이들 화물 이외의 외국화물에 대하여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선장, 기장, 운송인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검사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관계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하는 것

○ 상기 화물에 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화물 또는 화물이 있는 장소에 봉함을 설치하는 것

○ 수출입의 허가 또는 우편물 수출입의 간이절차 등에서 규정하는 검사 시에 견본을 채취 또는 제공하게 하는 것

○ 수입된 화물에 대하여 수입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화물 또는 화물에 대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그 물건(모조품 포함)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것

□ 세관직원은 수입자 등에게 물건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수입자 등이 제출한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음[113)]

○ 다만 이러한 질문 또는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114)]

---

112) 일본「관세법」제105조 제1항
113) 일본「관세법」제105조 제2항
114) 일본「관세법」제105조 제3항

□ 자동통관처리시스템(NACCS)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세관의 통관정보 종합판정 시스템(Customs Intelligence Data System)을 통해 화물의 위험도를 분류하고 고위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됨[115)]

□ 수입물품 검사대상은 NACCS를 통해 접수된 수입신고 내역을 기초로 선별되며, 수입물품의 종류, 수입자의 신용도, 거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판정함

○ 위험도 구분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며, 구분 3으로 분류된 물품은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심사함

- 구분1: 서류심사 생략, 즉시 허가
- 구분2: 서류심사
- 구분3: 화물검사

□ 검사대상 선별기준은 요코하마세관 내 총괄통관정보관리센터에서 전국 공통의 전산선별기준(Central C/S)을 총괄·관리하며, 각 세관에는 총괄통관정보관리관실이 배치되어 각 세관의 업무 환경과 지역적 환경을 반영한 전산선별기준(Local C/S)을 마련·운용하여 중앙 기준을 보완하고 있음

○ 요코하마세관의 총괄통관정보관리센터는 전산선별기준의 추가, 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급기관인 재무성 관세국 업무와 사전협의를 거침

#### 4) 선별시스템[116)]

가) CIS

□ 일본은 통관정보종합판정시스템(Customs Intelligence database System, CIS)을 전국 세관에 배치하여 수출입 통관실적, 선박 입출항 실적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115)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https://www.jetro.go.jp/world/qa/04A-020107.html, 검색일자: 2025. 7. 15.
116) 황윤주, 「관세국경에서의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한 일 비교연구」, 관세청, 2019. 3.

수집·정리·축적하고, 이를 분석·가공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관세국경 단속에 기여하고 있음

□ 아울러 NACCS 시스템은 수출입통관 정보, 업체 프로파일, 세관 정보관리관(ITO)이 생성한 정보, 통관 오류 정보, 화물검사 결과, 범칙 조사 및 사후 심사 결과 등 각종 세관업무 데이터를 관리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기능하고 있음

□ 이러한 데이터는 NACCS에 설정된 전산선별기준(C/S)에 의해 자동 분석되는 동시에 세관공무원이 해당 분석 결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우범화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선별함

나) 사전 화물정보 제출제도(AFR)[117]

□ 사전 화물정보 제출제도(Advance Filing Rules, AFR)는 일본에 입항 예정인 선박에 적재될 컨테이너 화물 정보를 선사 또는 NVOCC(무선박운송인)이 원칙적으로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 이에 따라 선사(Shipping company)는 Master B/L 단위, NVOCC는 House B/L 단위의 화물 정보를 NACC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사전 화물정보는 일본 세관의 위험분석에 활용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선적금지, 추가 정보 요구, 하역 불가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 DNL(Do Not Load): 고위험 화물로 판단된 경우 선적이 금지됨

○ HLD(Hold): 제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정보가 요구됨

○ DNU(Do Not Unload):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입항할 경우 하역이 불가함

117) 일본 관세국, 「Summary of the Advance Filing Rules on Maritime Container Cargo Information」, https://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5/index.htm, 검색일자: 2025. 7. 15.

□ 또한 기한 내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일본 「관세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다) 첨단 기술의 활용

□ (대형 엑스레이 검사기)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 엑스레이 검사장비 도입으로 컨테이너 1개당 검사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약 10분으로 단축됨

○ 2001년 요코하마항에 대형 엑스레이 검색장치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일본 전국 13개항 16개소에 배치되어 있음

□ (문형 금속탐지기) 일본 세관은 2017년부터 실시된 금밀수 차단을 위한 「STOP 금밀수」 첫 번째 전략의 핵심과제로 문형금속탐지기를 새롭게 도입하여 전국세관 공항 및 각 항만에 배치함

○ 기존의 휴대형 금속탐지기에 비해 보다 많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흐름을 끊지 않고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한편, 엄격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부정약물 및 폭발물 탐지장치) 검사대상 화물을 손상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은닉된 부정약물 및 폭발물의 탐지가 가능하여 수출입화물 및 출입국 여행자의 급증에도 신속하고 엄격한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부정약물·폭발물 탐지장치는 수출입 상업화물, 출입국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국제우편 등의 표면을 닦아서 검사대상 물질을 채취하고 이를 이온화하여 질량을 분석하여 부정약물 및 폭발물을 탐지하는 장치로서 지금까지 많은 적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해당 기기는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음

□ (여권리더기) 여권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여행자휴대품 통관을 가능하게 하고, 위험도가 높은 여행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여행자는 원활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부두 감시카메라) 사회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우려가 높은 국가 지역으로부터 출항된 선박이 다수 입항하는 항구 내 철탑 등에 야간에도 감지가 가능한 고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화물 적재 하역상황, 선원이나 선박 왕래자 등의 승하선 및 화물의 인수인도 등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입국장 전자신고게이트) 입국 여행자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세관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입국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QR코드와 IC여권을 인식시키면 전자적 신고가 가능함

○ 이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축적되어 우범 여행자 분석 등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 가능함

라) PNR 및 API 정보

□ 세관에서는 정보센터 내에 설치된 PIU(Passenger Information Unit)에서 승객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일원화하여 처리하며, PIU는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우범여행자를 사전에 선정, 시스템에 등록하며, 현장에서는 당해 정보에 근거하여 여행자 검사를 실시함

○ 승객예약기록(PNR)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출발지, 최종목적지 등의 사전여객정보(Advance Passenger Information)를 비롯하여 예약연월일, 운임 지불 방법, 여행 일정, 동행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마) AEO

□ 일본 세관은 현재 6개 부문(수입자, 수출자, 창고업자, 통관업자, 운송업자, 제조자)에 대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 세관은 2024년 12월 기준 13개국과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고, 대만과는 민간 차원의 상호인정 협정(2018. 11.)을 체결, 스위스·인도네시아와는 협상 중에 있음[118)]

○ 이는 기존 단속 중심의 국제 협력에서 벗어나 준법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며, 상호인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IT 시스템과 정보교환 채널 구축이 필수적임

바) 정보수집 및 홍보 강화

□ 일본 세관은 전국 공통밀수신고번호(무료, 24시간 접수)를 설치하고, 리플릿, 포스터, 세관홈페이지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세관의 관세국경단속 대책 등을 홍보함으로써 일반인으로부터 폭넓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제무역의 안전확보 및 원활화의 양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정약물·총포 등 사회악물품이나 테러 관련물품 등의 단속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AEO 제도 등 수출입통관제도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사)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

□ 일본 관세국 차원에서는 정보센터가 해외 세관당국 등과 보다 한층 원활하게 정보교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 지역 등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35개 국가 지역과 정부 간 협정, 세관당국 간 이행협력 등을 체결 이행하고 있음

□ WCO 및 WCO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보연락사무소(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RILO) 차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정보수집의 거점이 될 만한 국가 및 지역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정보교환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18) 일본 재무성, 『AEO program』, 2024. 12.

### 5) 신변검색 권한

□ 일본「관세법」은 신체 수색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세관직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조사·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관세법」 제105조는 통관 절차상 세관직원이 휴대품·서류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는 물적 조사 권한에 해당함

○ 「관세법」 제121조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 현장 수색에 신체 수색도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임

□ 세관직원은 일본「관세법」 제105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며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함[119]

○ 세관직원은 질문·검사 권한에 따라 수입자 등이 제출한 물건을 일시 유치할 수 있음[120]

○ 세관직원의 질문·검사·유치 권한이 형사수사를 위한 권한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관의 권한은 행정상 통관검사 목적으로 한정되며, 형사 절차와 구분됨[121]

□ 세관직원은 일본「관세법」 제121조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이 발부한 허가장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현장검사

○ 범칙혐의자의 신체, 물건, 주거 등에 대한 수색

○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 물건의 압류

○ 기록명령부 압류: 전자기록을 보관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기록을 기록매체에 저장 또는 출력하도록 명령한 후, 그 매체를 압류함

119) 일본「관세법」 제105조 제1항
120) 일본「관세법」 제105조 제2항
121) 일본「관세법」 제105조 제4항

□ 다만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등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범죄 현장에서 직접 수색·압류 가능함[122]

□ 또한 전자기록이 포함된 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기록매체 자체가 아닌 출력물이나 복사물로 대체 압수 가능함[123]

□ 다음의 규정은 제121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을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 인권 보호의 보완장치로 기능함

○ 세관직원은 수색 또는 압류를 집행할 때 수색 또는 압류 허가장을 제시해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함[124]

○ 현장검사 또는 압류 대상 물건이 전자기록이 포함된 기록매체인 경우 세관직원은 수색 또는 압류를 받는 자에게 전자계산기기 조작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125]

○ 현장검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실시하는 경우 세관직원은 법원의 허가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함[126]

○ 세관직원은 질문, 검사, 유치, 현장검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실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127]

○ 세관직원은 현장검사, 수색, 압류 또는 기록명령부 압류를 집행할 시 필요에 따라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128]

○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경우에는 성년 여성을 참여시켜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음[129]

---

122) 일본「관세법」제124조 제1항
123) 일본「관세법」제125조
124) 일본「관세법」제126조
125) 일본「관세법」제127조
126) 일본「관세법」제128조
127) 일본「관세법」제129조
128) 일본「관세법」제130조
129) 일본「관세법」제131조

## 다. 사후관리

### 1) 사후관리제도(PCA)[130]

□ 일본은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 PCA) 제도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포함한 위해물품의 밀수 및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밀수 경로가 다변화되고 위해물품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 통제(Border Control)뿐만 아니라 통관 이후 단계에서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 일본의 사후관리제도는 단순한 세액 추징이나 법규 준수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위험기반 접근을 통해 마약, 총기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고위험 품목에 대한 사후감시, 국제 밀수 단속, 사회 위해물품 대응 등 다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다층적 통제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보 분석 기반 조사) 수입신고 정보, ICS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화물 및 위험 수입자에 대한 분석 및 선별을 실시함

○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경찰·마약단속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적 밀수 및 위해물품 유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함

○ (국제 정보 교류 강화) WCO, 아세안 회원국 등과의 정보교류 및 공동 단속 활동도 정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밀수 동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역내 공조 기반을 강화함

○ (장비 활용 및 사후분석 강화) 고성능 엑스레이 장비, 마약탐지견, 화학분석 장비 등 첨단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

130) 일본 재무성, "Post-Clearance Audit,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Division Report (2021 Edition", 2021.

며, 사후조사 결과 및 적발 통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선별기준과 조사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2) 벌칙

□ 일본의 관세 범죄에 대한 형벌은 「관세법」 제10장(벌칙)에 규정되어 있음

가) 수입금지 물품의 수입

□ 수입금지 물품으로 열거된 화물 중 「관세법」 제69조의11(수입금지 화물)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다음의 화물을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131]

○ 마약류, 총기류, 폭발물, 화약류,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위조화폐 등

○ 상기 예비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132]

□ 또한 「관세법」 제69조의11(수입금지 화물)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에 열거된 다음의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133]

○ 공공의 안전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및 그 밖의 물품, 아동포르노,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등

○ 상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134] 예비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135]

---

131) 일본 「관세법」 제109조 제1항
132) 일본 「관세법」 제109조 제4항
133) 일본 「관세법」 제109조 제2항
134) 일본 「관세법」 제109조 제3항
135) 일본 「관세법」 제109조 제5항

나) 무허가 수출입

□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을 허가받지 않고 수출입한 자와 신고 또는 검사에 허위로 신고 또는 증명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을 수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136]

○ 다만 그 범죄와 관련된 화물 가격의 5배가 1천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은 그 가격의 5배 이하로 함

□ 신고 또는 검사 시에 통관업자의 허위 신고나 증명 또는 허위 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그 행위를 한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함[137]

○ 이들 미수범에 대해서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함[138]

○ 또한 중대한 과실로 제111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부과함[139]

□ 상기 예비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다만 그 범죄와 관련된 화물 가격의 5배가 500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은 그 가격의 5배 이하로 함

다) 밀수품 취득죄

□ 수출입금지화물 등의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대하여 이를 알고 운반, 보관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의 매개 또는 알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140]

---

136) 일본「관세법」제111조 제1항
137) 일본「관세법」제111조 제2항
138) 일본「관세법」제111조 제3항
139) 일본「관세법」제116조

□ 상기 범죄와 관련된 관세 또는 관세환급액의 5배가 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전항의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그 관세 또는 관세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141]

□ 또한 상기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대하여 이를 알고 운반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142]

○ 다만 그 범죄와 관련된 화물 가격의 3배가 500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은 그 가격의 3배 이하로 함

# 4. 호주

##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1) 조직[143]

□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는 국경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합법적인 무역·여행 촉진에서부터 이민·세관 단속, 국경 안보까지 담당하는 위험관리 조직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국경 집행기관 역할) 출입국 관리, 불법이민 단속, 마약·무기·불법물품 차단, 국경 범죄 수사 등 국경 전반에 대한 통제·단속 권한을 보유함

○ (세관 집행 기능) 수출입 화물 검색, 고위험 물품 단속, 관세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처벌 등 공항·항구에서의 현장 집행 업무를 담당함

---

140) 일본「관세법」제112조 제1항
141) 일본「관세법」제112조 제2항
142) 일본「관세법」제112조 제3항
143) 호주 내무부, https://www.transparency.gov.au/publications/home-affairs/department-of-home-affairs/department-of-home-affairs-annual-report-2022-23, 검색일자: 2025. 7. 14.

○ (위험관리 기능) 고위험 화물 및 여행자 선별을 위해 인공지능(AI), 자동화 시스템, 사전정보 기반 분석 등을 활용하여 국경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함

□ ABF는 내무부 산하에 속하나 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경 최일선에서 법 집행, 민간 해양 안보, 구금, 세관 활동 전반에 걸쳐 내무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함

○ 2015년 호주 이민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와 호주 세관국경보호부(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가 통합되어, 관세 및 이민법 집행과 국경 보호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인 ABF를 설립한 것임

○ 우리나라는 관세청이 정책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지만, 호주는 정책(내무부)과 집행(ABF)을 분리한 이원화 구조임

○ ABF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조사·단속, 출입국 관리, 일부 국경수사 권한을 포괄하는 국경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짐

□ ABF 산하에는 NBTC(National Border Targeting Centre)를 설립하여 ABF의 집행을 지원하고,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고위험 여행자·화물을 선별·대응함[144]

○ 2014년 개소 이후 미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의 유사 타깃팅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2) 현황

가) 관세국경 현황

□ ABF는 모든 국제 화물과 여행자를 전수 검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거래나 인물에 집중하는 '위험 기반(risk-based)' 및 '정보 중심(intelligence-led)'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145]

144) 호주 연방정부, https://www.directory.gov.au/portfolios/home-affairs/department-home-affairs/national-border-targeting-centre, 검색일자: 2025. 7. 15.

145)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Risk Management in the Processing of Sea and Air Cargo Imports," The Auditor-General Audit Report, No.15, 2011. 12, p. 12.

○ 위험관리는 식별, 평가, 대응, 모니터링, 검토의 주기적 절차로 운영됨
○ 내부 감사위원회가 전략적 위험 평가와 감사 계획 수립을 주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고위험 거래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호주 연례 보고서(2022~2023년)에 따르면 국경수비대는 해상·항공 감시, 여행자 밀입국 대응, 마약 및 밀수물품 적발 등에서 리스크를 기반으로 자원을 배치하고 있음[146]
○ 최근 코카인·헤로인 등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ABF는 국제 첩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고위험 선적물 및 여행자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있음

나) 적발 현황

□ 2024년 기준 호주의 주요 단속 중점 분야와 유형별 밀수 물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147]
○ 주요 단속 중점 분야는 SACs, FIDS, Depots으로 명시함
- SACs(Self-Assessed Clearances): 소액 물품(보통 1천만호주달러 이하)의 경우 밀수·위장 반입에 악용 가능성이 높음
- FIDS(Freight Import Data Sets): 수입화물 관련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위험 선별 수행함
- Depots: 보세창고 등은 현장 검사 및 추적 강화 대상에 해당함
○ 유형별 밀수 물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Tobacco/Vapes(담배 및 전자담배)
- Drugs(마약류)
- Weapons(무기류)
- Undeclared Cash(미신고 현금)

146) 호주 내무부, https://www.transparency.gov.au/publications/home-affairs/department-of-home-affairs/department-of-home-affairs-annual-report-2022-23, 검색일자: 2025. 7. 14.
147) ABF, *Goods Compliance Update 2024*, 2024. 10.

- Wildlife Goods(야생동물 관련 물품)
- Any Prohibited or Concealed Goods(기타 금지 또는 은닉 물품)

□ ABF 연방경찰(AFP)에 따르면 2023~2024년 회계연도 동안 항공 및 해상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총 740건 이상 적발됨[148]

○ 적발된 마약은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하며, 총 중량은 45톤 이상에 달함

□ 또한 호주는 담배류 밀수에 대해 엄격하며, 불법 수입금지 품목 중 하나인 담배 제품의 경우 총 5만 1,600건 이상의 단속을 통해 궐련형 담배 18억개와 잎담배 436톤 이상을 적발함[149]

○ 국경수비대는 불법으로 담배류의 국경 차단뿐만 아니라 해외 및 국내 파트너와 연계하여 공급 초기단계부터 운송, 유통 분야까지 추적, 단속을 수행하고 있음

□ 호주 연방경찰과 국경수비대의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호주로 반입되는 불법 마약류의 밀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힘[150]

○ (여행자휴대품) 2024년 2월, 여행자가 체내 은닉한 마약(12만 7,500달러 상당의 헤로인이 들어 있는 13개의 알약)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적발함[151]

○ (국제우편물) 2024년 5월, 베트남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페인트 롤러 브러시에 8.8kg 상당의 헤로인을 은닉한 것을 적발함[152]

---

148) 호주 연방경찰(AFP), https://www.afp.gov.au/news-centre/media-release/unwrapped-2024-most-creative-drug-import-attempts-revealed?utm_source=, 검색일자: 2025. 7. 16.
149) 호주 연방경찰(AFP), https://www.abf.gov.au/newsroom-subsite/Pages/Multi-agency-focus-to-bring-down-criminals-this-World-No-Tobacco-Day.aspx?utm, 검색일자: 2025. 7. 16.
150) 호주 연방경찰(AFP), https://www.afp.gov.au/news-centre/media-release/unwrapped-2024-most-creative-drug-import-attempts-revealed?utm, 검색일자: 2025. 7. 17.
151) 호주 연방경찰(AFP), https://www.abf.gov.au/newsroom-subsite/Pages/WA-couple-jailed-over-Valentine%E2%80%99s-Day-internal-heroin-import.aspx, 검색일자: 2025. 7. 17.
152) 호주 연방경찰(AFP), https://www.afp.gov.au/news-centre/media-release/man-charged-over-alleged-heroin-importation-paint-brushes, 검색일자: 2025. 7. 17.

○ (화물) 2025년 7월, 태국에서 해상화물을 통해 발송된 직물 롤(rolls of fabric)에서 597kg의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함[153]

##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1) 수입금지·제한 물품

□ 호주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제50조 내지 제51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주로 동물·식물, 방위 및 전략물자, 공산품, 의약품, 무기류, 총기류, 위험물, 지적재산권 및 문화재, 기타류 등 아홉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표 Ⅳ-4〉는 2025년 7월 기준 수출입 금지 물품 목록을 정리한 것임

□ 해당 규정은 「Customs(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 1956」과 연계되어 구체적인 품목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ABF는 이러한 법령을 기반으로 수입물품의 적법성을 심사함

○ 제50조 제1항: 호주 총독(Governor-General)은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regulation)[154]을 제정함으로써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prohibit)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제50조 제2항: 수입 금지 조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음

- 전면적 수입 금지(Unconditional prohibition)
- 조건부 수입 금지(Prohibited unless specified conditions are met)
-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금지
- 허가서 또는 라이센스 없이는 수입 금지

153) 호주 연방경찰(AFP), https://www.afp.gov.au/news-centre/media-release/trio-arrested-over-alleged-plot-import-600kg-meth-concealed-rolls-fabric, 검색일자: 2025. 7. 17.
154) Customs(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 1956

○ 제50조 제3항: 규정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관련 허가(Permit), 면허(License), 인증서(Certification)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정부 기관이 이를 발급함

□ 이러한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은 ABF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주로 동물, 식물, 유해물질, 화학품, 무기류 등이 해당됨[155]

○ 담배 제품의 경우 수입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화장품과 장난감 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그 외 전자제품, 가스 사용 기기 및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사전 확인이 필요함

〈표 Ⅳ-4〉 호주 수출입 금지물품 목록

| 구분 | 물품명 | 분류 | 유형 |
|---|---|---|---|
| 1 | 아나볼릭 및 안드로제닉 물질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입 |
| 2 | ANZAC 관련 물품 | 지적재산권 및 문화재 관련 물품 | 수입 |
| 3 | 석면 | 유해 물품 | 수입 |
| 4 | 호주 토종 동식물 종 | 동식물 | 수출 |
| 5 | 생물학적 제제 | 방위 및 전략 물품 | 수출 |
| 6 | 방탄복 | 무기류 | 수입 |
| 7 | 고양이·개 털 제품 | 동식물 | 수입/수출 |
| 8 | 유약 처리 도자기 | 소비재 | 수입 |
| 9 | 특정 화학물질 | 방위 및 전략 물품 | 수출 |
| 10 | 화학무기 | 무기류 | 수입 |
| 11 | 소비자법 규제 물품 | 소비재 | 수입 |
| 12 | 독성 화장품 | 소비재 | 수입 |
| 13 | 위조 신용카드 | 소비재 | 수입/수출 |
| 14 | 문화재 관련 물품 | 지적재산권 및 문화재 관련 물품 | 수입/수출 |
| 15 | 방위 및 전략 물품 | 방위 및 전략 물품 | 수출 |

155)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 검색일자: 2025. 7. 10.

〈표 Ⅳ-4〉의 계속

| 구분 | 물품명 | 분류 | 유형 |
|---|---|---|---|
| 16 | 지향성 에너지 무기 | 무기류 | 수입/수출 |
| 17 | 뾰족 돌출 개 목줄 | 소비재 | 수입 |
| 18 | 위험견 품종 | 동식물 | 수입 |
| 19 | 마약류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입 |
| 20 | 전자기 무기 | 무기류 | 수입/수출 |
| 21 | 멸종위기 동식물(CITES) | 동식물 | 수입/수출 |
| 22 | 엔지니어드 스톤 | 유해 물품 | 수입 |
| 23 | 독성 지우개 | 소비재 | 수입 |
| 24 | 플라스틱 폭발물 | 유해 물품 | 수입 |
| 25 | 확장형 곤봉 | 무기류 | 수입 |
| 26 | 총기·부품·탄약 | 총기류 | 수입/수출 |
| 27 | 어류 | 동식물 | 수입 |
| 28 | 전자식 모기채 | 소비재 | 수입 |
| 29 | 호주 주·준주 국기·문장·인장 사용 물품 | 지적재산권 및 문화재 관련 물품 | 수입 |
| 25 | 확장형 곤봉 | 무기류 | 수입 |
| 26 | 총기·부품·탄약 | 총기류 | 수입/수출 |
| 27 | 어류 | 동식물 | 수입 |
| 28 | 전자식 모기채 | 소비재 | 수입 |
| 29 | 호주 주·준주 국기·문장·인장 사용 물품 | 지적재산권 및 문화재 관련 물품 | 수입 |
| 30 | 호주 연방 국기·문장·인장 사용 물품 | 지적재산권 및 문화재 관련 물품 | 수입 |
| 31 | 성장호르몬 및 인체·동물 유래 물질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입 |
| 32 | 유해 폐기물 | 유해 물품 | 수입/수출 |
| 33 | 인체 체액·장기·조직 | 기타 | 수출 |
| 34 | 흡입 파이프 | 기타 | 수입 |
| 35 | 모의총기 | 총기류 | 수입 |
| 36 | 백열전구 | 소비재 | 수입 |
| 37 | 카라빗 나이프 | 무기류 | 수입 |
| 38 | 카바 | 기타 | 수입 |
| 39 | 칼·단검 | 무기류 | 수입 |

〈표 Ⅳ-4〉의 계속

| 구분 | 물품명 | 분류 | 유형 |
|---|---|---|---|
| 40 | 레이저 포인터 | 소비재 | 수입 |
| 41 | 라이터 | 소비재 | 수입 |
| 42 | 수은 | 유해 물품 | 수입/수출 |
| 43 | 독성 저금통 | 소비재 | 수입 |
| 44 | 신종 향정신성 물질 및 대체 약물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입 |
| 45 | 핵물질 | 방위 및 전략 물품 | 수출 |
| 46 | 오존층 파괴 물질/합성 온실가스 | 유해 물품 | 수입/수출 |
| 47 | 페인트볼 총 | 총기류 | 수입 |
| 48 | 독성 연필·붓 | 소비재 | 수입 |
| 49 | 페퍼스프레이 | 기타 | 수입 |
| 50 | 농약 및 유해 화학물질 | 유해 물품 | 수입/수출 |
| 51 | PCB 등 화학물질 | 유해 물품 | 수입 |
| 52 | 포르노 및 불건전물 | 기타 | 수입/수출 |
| 53 | 전구체 물질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출 |
| 54 | 처방약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출 |
| 55 | 방사성 물질 | 방위 및 전략 물품 | 수입/수출 |
| 56 | 러프 다이아몬드(킴벌리 프로세스) | 기타 | 수입/수출 |
| 57 | 제재 국가·단체 관련 물품 | 기타 | 수입/수출 |
| 58 | 안전민감성 질산암모늄 | 방위 및 전략 물품 | 수입/수출 |
| 59 | 전파 방해기기 | 기타 | 수입 |
| 60 | 비비탄 총 | 총기류 | 수입 |
| 61 | 자살도구 | 기타 | 수입/수출 |
| 62 | 정제기·캡슐기 | 기타 | 수입 |
| 63 | 치료제 및 관련 물질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입 |
| 64 | 담배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입 |
| 65 | 씹는 담배·코담배 | 소비재 | 수입 |
| 66 | 미가공 잎담배·담배 폐기물 | 동식물 | 수입 |
| 67 | 이빨고기(toothfish) | 동식물 | 수입/수출 |
| 68 | 독성 장난감 | 소비재 | 수입 |

〈표 Ⅳ-4〉의 계속

| 구분 | 물품명 | 분류 | 유형 |
|---|---|---|---|
| 69 | 폭발탄 발사 가능 경보기 | 총기류 | 수입/수출 |
| 70 | 전자담배 제품 | 의약품 및 치료 물질 | 수입 |
| 71 | 인간 배아 복제 유래 생체 물질 | 기타 | 수입/수출 |
| 72 | 전쟁물자 및 기타 무기류 | 무기류 | 수입 |
| 73 | 와인 및 브랜디 | 기타 | 수출 |
| 74 | 울포장 자루 | 기타 | 수입 |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 검색일자: 2025. 7. 10.

□ 또한 호주는 수입금지 규정에 따라 고위험 품목군을 별도로 지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허가 없이는 불허하고 있음[156]

○ 해당 규정(Schedule 2, 3, 13)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물품이 포함됨

- 담배·씹는 담배·전자담배 등(Schedule 2)
- 무기류 및 탄약, 복제 총기, 전기 충격기 등(Schedule 13, Regulation 4F/4H)
- CITES에 등재된 야생동물 및 그 제품들(Schedule 2, Regulation 4W)
- 석면 또는 아스베스토스(chrysotile asbestos) 제품(Schedule 2, Regulation 4C)
- 고농도 암모늄 나이트레이트(Amm. nitrate〉45%)(Schedule 11, Regulation 4X)
- PCBs, PCTs, 특정 유독성 화학물질 및 전구체(Schedule 11, Schedule 4/8)

□ 2024년 9월에는 「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 1956」를 개정하여 지니어드 스톤(benchtops, panels, slabs)이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됨[157]

○ 해당 수입금지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고 WHS(Work Health and Safety) 규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규폐증(silicosis) 예방을 위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됨[158]

156) 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 1956
157) Customs (Prohibited Imports) Amendment (Engineered Stone) Regulations 2024

□ 2025년 5월에는 「ABF Goods Compliance Update 시리즈」에 나타난 주요 고위험 품목 사례에서 총기류, 전기 충격 무기, precursor chemicals 등에 대한 단속 활동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사례가 언급됨[159]

### 2) 선별기준

#### 가) 위험관리 모델

□ 호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Targeting 2.0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위협 분석 및 고위험 화물 선별이 가능한 위험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160]

○ 리스크 기반 선별(risk-based targeting)을 통해 사전 데이터(화물, 선박, 항공편, 여행자 정보 등)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이상패턴을 자동 감지하고 고위험 화물 및 우선 검색 대상 화물을 지정함

○ 원격 검색(Remote Screening)을 통해 주요 공항·항만에서 확보된 X-ray 영상 등을 실시간 또는 지연된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원격 판독함

□ 또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at Customs)를 위해 '호주-뉴질랜드 위험관리 표준(AS/NZS 4360)'과 '연방정부 관리 자문위원회의 지침서'를 기반으로 한 위험관리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표 Ⅳ-5〉와 같음

158) Safe Work Australia, Managing the risks of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from engineered stone, 2024.
159) ABF, Goods Compliance Update, 2025. 5., p. 13.
160) ABF, Trade Technology Working Group(TTWG) Communique, 2025. 4. 20.

〈표 Ⅳ-5〉 호주 관세국경 위험관리 모델

| 단계 | 구분 | 주요 내용 |
|---|---|---|
| 1단계 | 위험관리 기반 설정(Establish Context) | 조직의 목표, 전략 등 정의 |
| 2단계 | 위험 식별(Identify Risks)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목록화 |
| 3단계 | 위험 분석(Analyse Risks) | 위험의 빈도와 영향도 분석 |
| 4단계 | 위험 평가(Evaluate Risks) | 대응 필요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 5단계 | 위험 대응(Treat Risks) | 회피, 감소, 이전, 수용 등의 전략 실행 |
| 6단계 | 모니터링 및 검토(Monitor & Review) | 지속적 추적 및 필요시 정책 수정 |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RISK MANAGEMENT AT CUSTOMS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위험관리 기반 설정은 위험관리 모델의 첫 번째 단계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기 위한 조직적·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임

○ [그림 Ⅳ-3]과 같이 이러한 단계는 이후의 위험 식별, 분석, 대응 등 모든 절차의 방향성과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그림 Ⅳ-3] 통합 위험관리 모델(전략·운영·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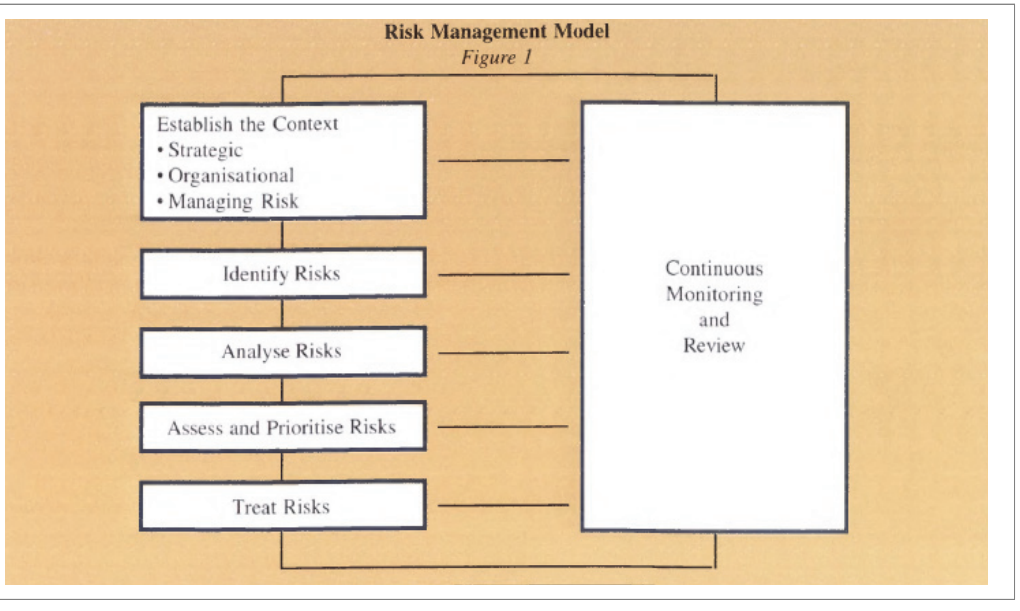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RISK MANAGEMENT AT CUSTOMS, https://www.austlii.edu.au/au/journals/ManifestJlAUCS/1998/11.pdf, 검색일자: 2025. 7.10

□ 위험관리 기반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전략적 위험 관리(Strategic Level) ② 운영적 위험 관리(Operational Level) ③ 전술적 위험 관리(Tactical Level)로 구분됨[161]

○ 전략적 위험관리는 연간 계획(Annual Risk Plan), 국가 전략 문서 등에서 다루는 고위험 요인들을 설정하는 것임

○ 운영적 위험관리는 수입 화물에 대한 대상별 맞춤 전략(Cargo Intervention Strategy, CIS) 및 차별화된 대응 모델(Differentiated Risk Response Model, DRRM)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전술적 위험관리는 Profiles(프로파일링) 및 Alerts(경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위험 화물이나 여객을 식별하고 검사를 지시하는 것임

□ 수입물품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비파괴 방식인 X-ray 검사로 이루어지는 물품검사를 거쳐, 개장검사 방식으로 정밀검사를 수행함[162]

○ 1차 물품검사는 필요한 경우 탐지견, 스캐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 선별된 컨테이너의 약 90%는 X-ray 검사를 거쳐 30분 이내에 반출되어 즉시 부두로 되돌려 보내지며, X-ray 검사는 이미지 분석절차를 포함하여 약 15분 정도 소요됨

○ 주요 화물검사시설(Container or Cargo Examination Facilities, CEF)에서는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린 채로 X-ray 스캐닝을 거침

○ 대부분의 경우 선별된 컨테이너의 10%가량에 대해 추가적인 물리적 검사가 행해지며, 대부분이 24시간 이내에 부두로 되돌려 보내짐

○ X-ray 검사를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컨테이너는 물리적 검사를 위하여 양하되며, 소규모의 CEF에서는 모든 컨테이너가 물리적 검사를 위해 양하됨

---

161) 호주 국경수비대, 「호주 해상 및 항공 화물 수입처리 시 위험관리」, https://www.anao.gov.au/work/performance-audit/risk-management-the-processing-sea-and-air-cargo-imports, 검색일자: 2025. 7. 11.

162)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Risk Management in the Processing of Sea and Air Cargo Imports," Audit Report No.15, 2011. 12.

○ 2차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보다 세부적인 검색 방법인 해체(intrusive) 방식으로 세관직원이 컨테이너 또는 화물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장검사를 수행하는데, 물품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해체작업이 요구되기도 함

나) 수입자 및 화물 관련 사전정보(SACs, FIDS 등)[163]

□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반입되는 모든 화물은 정보 수집, 타겟팅, 프로파일링 등의 기법을 통해 사전에 선별되고 있음

○ 일부 검사는 항공기가 호주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항공사는 탑승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

○ 세관은 항공사 예약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승객을 식별함

□ 위험관리는 자가평가(self-assessment) 환경에서 최소한의 개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탈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방지하고자 지능기반, 위험기반의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음[164]

○ 금지품, 테러 물품 등 고위험 요소의 밀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

□ SACs(Self-Assessed Clearance declarations) 및 FIDs(Full Import Declarations)는 ABF가 위험을 사전 식별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임

○ 신고된 품목의 발송인·수취인 정보, HS 코드, 가격, 원산지, 운송경로 등을 기반으로 과거 위반 기록, 신고 내용의 일관성, 첩보 등의 정보와 대조 분석함

○ ABF는 자동화된 위험평가 시스템(Risk Assessment System)을 통해 SACs/FIDs

163) 호주 국경수비대, *Goods Compliance Update*, 2025. 5.

164) 호주 국경수비대, 「호주 해상 및 항공 화물 수입처리 시 위험관리」, https://www.anao.gov.au/work/performance-audit/risk-management-the-processing-sea-and-air-cargo-imports, 검색일자: 2025. 7. 11.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특정 패턴에 따라 수동 심사 대상으로 분류함

○ 밀수 시도는 종종 내부 정보를 가진 공급망의 내부 기여자(internal conspirators)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ABF는 신고되지 않은 접근의 시도나 공급망 취약점에도 주목함

다) ABF와 AFP의 첩보 분석 정보

□ ABF와 AFP는 첩보를 공유하고 공동 분석 체계에 참여하여 고위험 화물 및 인물 식별에 활용하고 있음[165]

○ ABF 내부에는 Border Targeting Centre, Operational Intelligence Branch 등이 있으며 수요를 기반으로 첩보 및 위협정보를 통합 분석함

□ ABF는 첩보 기반 리스크 기반 문제 접근(intelligence-led, 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적발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조직범죄 밀수 사례 및 모니터링 정보에 기반해 화물·수입자 리스크를 구축함[166]

○ AFP 및 ABF 합동 작전 사례에서는 첩보 분석을 기반으로 high-risk cargo, 인물 선별, 금지품목 밀수 감지 등을 신속 대응 체계로 구조화하고 있음

□ AFP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경 관련 범죄·밀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167]

---

165) CBP, https://www.abf.gov.au/newsroom-subsite/Pages/Queensland-man-charged-with-attempting-to-import-hundreds-of-firearm-parts-from-the-USA.aspx?utm, 검색일자: 2025. 7. 25.
166) ABF, *FACTBOOK 2019*, p. 14.
167) 호주 외교통상부, https://www.dfat.gov.au/publications/countries-economies-and-regions/60th-anniversary-australia-malaysia/60-years-australia-in-malaysia/chapter1-a-brave-new-world.html?utm, 검색일자: 2025. 7. 25.

### 3) 선별 시스템[168]

#### 가) ICS

□ ABF는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통해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한 사전 위험 평가(risk assess)를 실시하고, 필요시 개입(intervene)한다고 명시하고 있음[169]

○ ICS는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기 전 위험도를 판정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고위험 화물과 저위험 화물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함

○ ABF는 향후 10년간 화물 물동량이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동화·인공지능(AI) 기반 원격 스크리닝과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상 및 항공 화물의 상당 부분(예: 해상 화물의 100%, 항공 화물의 71%)이 도착 전 위험평가를 거치는데, 저위험 화물은 신속 통관, 고위험 화물은 추가 심사나 조치가 이루어짐

○ 마약, 테러 관련 물품 등 고위험 품목은 국경에서 적극적으로 탐지·차단하며, 기타 제한·금지 품목이나 관세 미납 등은 위험 수준에 따라 국경 내외에서 관리함

#### 나) 통합적 분석 운영 체계

□ ABF는 위험선별을 위해 고위험화물을 추적하는 위험분석 도구를 우범기준(Profile-based Targeting)과 항목기준(Alert-based Targeting)으로 구분함

○ 두 개의 기준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며, ICS의 분석 모듈 내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함

---

168) ABF, *Goods Compliance Update*, 2025. 5., p. 30.

169) ABF,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Pages/disclosing-information.aspx?utm, 검색일자: 2025. 7. 25.

○ 또한 정기적으로 기준을 재조정하여 실시간 정보 및 과거 단속 사례를 반영하고 위험 선별 정확도를 높임

□ 우범기준은 연방경찰청(AFP), 내무부(DHA), 기타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협업으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되며, 광범위한 패턴 인식 및 정성적 요소를 종합하여 특정 유형의 고위험 거래나 수입 행태를 식별함

○ 모든 수입신고 정보는 ICS(Integrated Cargo System)에 내장된 CRAM(Cargo Risk Assessment Module)을 통해 수집·분석되며, 사전에 정의된 우범기준과 대조하여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통제 조치를 지원함

○ 이를 통해 고위험 화물로 판단된 건은 통제조치(추가 검사, 통관 보류, 신체검색 등)로 연계됨

□ 항목기준은 개별 수입신고 항목(예: 선적 항구, 수입자 명의, 컨테이너 번호 등)에 기반하여 위험 요인에 따라 특정 위험 요소를 선별함

○ ISC 내에서 신고된 BRAM(Behavioural Risk Assessment Module)은 신고 항목의 비정상적 행태나 과거 패턴과 비교,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함

○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함

- 비정기적 또는 신규 거래자
- 고위험 국가발 물품 또는 특정 항구 경유
-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수입자·운송자와의 연관성

다) ATT 제도

□ 호주 ATT(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제도는 위험관리 체계에서 특정 대상(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체)을 우대하기 위해 선별시스템과 결합하여 작동하는 신뢰 기반의 제도로 볼 수 있음

○ 공인 대상과 공인 기준 그리고 공인 절차 등의 내용은 WCO의 SAFE Framework를 따름

□ ATT 제도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선별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위험관리 시스템(ICS 등) 안에서 위험도 평가 시 저위험을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이에 따라 ATT 제도는 관세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함

○ 해당 업체와 비해당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여 관세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신속통관과 관세당국의 서비스 우대 혜택을 실행함

라) 첨단 분석 기법 및 IT 시스템

□ ABF는 첨단 분석 기법 및 I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위험물품의 선별 및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고위험 화물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제고함은 물론, 검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통관 지연 최소화라는 운영상의 이점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

□ 주요 항만에 CEF(Container Examination Facilities)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고위험 화물에 대한 정밀 검색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고정식 X-ray 장비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모바일 X-ray 유닛(MXU), 이온스캔(Ion scan) 장비, 방사능 탐지기(Radiation detectors), 화학물질 탐지기(Chemical trace detectors) 등 다기능 검색 장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170]

□ CEF의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171]

○ 항만 도착 최소 48시간 전, 선사 또는 운송업체는 SCR(Sea Cargo Report)를 ICS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평가됨

---

170) ANAO, https://www.anao.gov.au/work/performance-audit/container-examination-facilities?utm, 검색일자: 2025. 7. 25.

171) Australian Customs Service, "Container Examination Facilities," 2005. 8.

○ 고위험으로 분류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홀드(hold)' 메시지가 전송되며, 해당 화물은 터미널 운영사(CTO)에 의해 CEF로 운반됨

○ CEF에서는 6MeV 또는 2.5MeV급 X-ray 장비를 사용하여 약 15분 내 영상 분석이 이루어지며, 전체의 약 90% 이상은 30분 이내에 원위치로 복귀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물리적 개봉 및 정밀 검사가 이루어짐

#### 4) 신변검색 권한

□ 호주 「관세법」 Division 1B(Detention and search of suspects)에 따라 세관직원은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구금(detention) 및 신변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다만 세관공무원은 직접적인 신체검사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입회 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음

가) 검사 및 질문 권한

□ 세관직원은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세관 통제 대상 물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관련 경험이 있는 다른 직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여행자의 물품은 검사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며, 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됨

- 포장물 개봉
- 엑스레이, 이온 스캐너 등의 장비 사용
- 물품 테스트 또는 분석
- 계량 또는 수량 확인
- 탐지견 활용
- 문서인 경우, 전자장치 또는 직접 열람

□ 또한 세관직원은 「관세법」 제195조 및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금지물품 소지 여부 등 위해물품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여행자에게 질문할 권한을 가짐

○ 출입국 심사 관련 사항, 야생동물 표본의 성격 및 출처, 통화 또는 유가증권(수표 등)의 소지 여부 등에 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음

○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하물에 대한 현품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수하물의 내용 및 성격
- 수하물 내 물품에 대한 본인의 인지 여부
- 출발 국가 및 여정 시작 위치
- 물품의 출처 및 가격, 획득 방식

나) 용의자의 구금 및 신체수색

□ 「관세법」 Division 1B(Detention and search of suspects)에서는 용의자의 구금 및 신체수색(frisk search)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합리적 근거 요건, 구금 조건, 수색 종류, 인권 보장, 보호대상자 절차, 장비 사용 규정, 법원 명령 및 시한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세관직원은 특정 장소에서 구금 담당관(detention officer)이 신체에 불법 물품(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에 따라 의심하는 경우에만 신체수색을 목적으로 구금할 수 있음[172]

○ 세관직원이 「관세법」 제187조에 따라 선박, 항공기, 시설에 탑승하여 수색 또는 기타 권한을 행사 중이고, 구금 담당관이 신체에 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172) 호주 「관세법」 제219L조

○ 합리적인 의심(suspicion reasonably)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a) 여행 일정(이전에 방문했거나 방문 예정인 장소 포함)
- (b) 호주 입출국 시 연방 법률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나 진술서
- (c) 소지한 문서(예: 여권, 비자, 항공권 등)
- (d) 이상한 행동(관세공무원이 관찰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 (e) 눈에 띄는 물품의 내용물이나 외관, 또는 소지한 수하물
- (f) 동법에 따라 세관직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 또는 답변 거부/불응
- (g) 동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제출 여부 및 제출된 문서 내용 또는 제출거부/불응

□ 「관세법」 제219L조에 따라 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은 금지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수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발견된 금지품을 압수할 수 있음[173]

○ 신체수색은 구금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구금자와 동일한 성별의 세관직원이 수색해야 함

○ 피구금자가 동법에 따른 공항·항만 등의 지정장소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세관직원은 수색 전에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수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피구금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 피구금자가 해당 공간에서 수색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공간으로 안내해야 함

○ 지정장소가 아닌 그 외 장소에 구금된 경우라도 세관직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구금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피구금자의 신체수색 과정에서 신체에 은닉한 물건이 발견되면 세관직원은 금지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174]

---

173) 호주 「관세법」 제219M조
174) 호주 「관세법」 제219N조

□ 이미 구금 중인 피구금자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수색(External search) 규정이 적용됨[175]

○ 피구금자가 신체수색(Frisk Search)에 응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 피구금자가 간이 수색에는 응했으나 동법 제219N조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물건을 제출하기를 거부한 경우

□ 이에 따라 구금 담당관이나 경찰관은 피구금자의 신체에 금지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외부수색을 위해 구금할 수 있음[176]

○ 이 경우 피구금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의 장소 중 하나로 이송되어야 함

- 세관직원 또는 경찰관의 판단하에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구금 장소
- 세관직원에 의해 구금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적절히 보장되는 장소
- 경찰관에 의해 구금된 경우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적절히 보장되는 장소

□ 외부수색 절차에 따른 수색 방법은 동의 또는 명령에 따라 구분하며, 명령에 따르는 경우 명령 발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177]

○ 동의에 의한 외부수색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즉시 외부수색을 실시해야 함

- 피구금자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피구금자가 외부수색에 동의할 것
- 동의 절차가 동법 제219RAA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동의에 의한 외부수색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금 담당관은 관할 법원의 법관의 영장을 받아 명령에 의한 외부수색을 진행함

- 다만 피구금자가 법관의 영장을 포기했거나 법관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세관직원에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

175) 호주「관세법」제219P조
176) 호주「관세법」제219Q조
177) 호주「관세법」제219R조

○ 다만 외부수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피구금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함

□ 외부수색의 절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피구금자의 경우 추가 절차에 따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연락권을 보장하고 있음[178]

○ 만약 피구금자가 보호가 필요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 수색은 피구금자의 법적보호자 또는 이해관계인 중 1인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입회자는 피구금자가 수용 가능한 자가 되어야 함

○ 또한 피구금자는 언제든지 타인과 연락이 가능이 가능한 권리가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락권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세관직원이나 경찰관의 판단하에 법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외부수색의 집행 방식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장비사용이 포함된 수색의 경우 정해진 요건을 따라야 함[179]

○ 외부수색의 집행은 피구금자와 동일한 성별의 세관직원 또는 경찰관이 직접 수행하며, 해당 명령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장비(예: X-ray, 스캐너) 사용은 피구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신체 샘플 채취 시에는 손의 외부표면에서만 가능하고 이미지·사진·샘플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함

□ 외부수색을 위해 피구금자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 전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지해야 함

○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연락할 권리가 있다는 점

---

178) 호주「관세법」제219R조
179) 호주「관세법」제219R조

□ 체내 은닉 시 의료 수색(internal medical search)은 세관직원 또는 경찰관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피구금자가 의심물질을 체내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됨[180]

□ 이에 따라 구금 담당관이나 경찰관은 피구금자의 체내에 의심스러운 물건을 은닉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구금할 수 있음[181]

○ 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실시함
- 비의료적 내부 스캔(non-medical internal scan)
- 구금 명령 신청을 하기위한 일시적인 구금

○ 이 경우 피구금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장 가까운 장소로 이송해야 하며, 그 장소에서 상기 목적을 위해 구금할 수 있음

○ 다만 의료적 내부 수색(internal medical search)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특정 구금 장소에서만 구금이 허용됨

□ 체내 은닉 시 의료행위가 아닌 스캐너 등의 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는 등의 비의료적 내부 스캔(Internal non-medical scan)의 요건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182]

○ 세관직원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구금자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의료적 내부스캔을 실시할 수 있음
- 피구금자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피구금자 본인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장비(prescribed equipment)를 사용한 스캔에 동의할 것
- 동의 절차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것

○ 특정 장비를 사용한 스캔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장비(prescribed equipment)를 사용할 것
-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 및 권한을 부여받은 세관직원에 의해 행해질 것

---

180) 호주「관세법」제219V조
181) 호주「관세법」제219S조
182) 호주「관세법」제219SA조

○ 이때 스캔을 수행하는 직원은 피구금자와 동일한 성별이어야 하며, 스캔 과정에서 생성된 사진 등은 개인정보보호와 인권보호 목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반드시 파기해야 함

□ 체내 은닉 시 의료적 내부 수색 절차에 따른 수색 방법은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의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183]

○ 동의에 의한 수색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관직원 또는 경찰관은 즉시 의료적 내부 수색을 실시해야 함

- 피구금자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아님
- 피구금자가 서면으로 의료적 내부 수색 절차에 동의함

○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관직원 또는 경찰관은 구금기간 만료 전까지 법원에 명령을 신청해야 함

○ 보호가 필요한 피구금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대리인이 있고 그 대리인이 동의하면 즉시 수색을 실시하며, 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관직원 또는 경찰관은 구금기간 만료 전까지 법원에 명령을 신청해야 함

□ 법원의 수색 명령은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수색이 완료될 때까지 피구금자를 계속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184]

○ 법원은 수색 명령이나 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 체내 은닉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 수색 시작 시점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 수색 시작 시점을 연장할 수 있음

- 지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명령에서 정한 시점 전까지
- 그 외의 경우 구금 종료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명령서에 명시된 시점 전까지

○ 다만 법원이 의료적 내부 수색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려야 함

183) 호주「관세법」제219V조
184) 호주「관세법」제219V조

○ 수색 명령서에 명시된 수색 개시 시점은 다음 중 48시간 이내로 하며, 법원은 피구금자가 수색 거부 시 일정 시간을 수색 명령서에 정할 수 있음
- 피구금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그 구금기간 종료 시점부터로 하며, 추가 구금된 경우에는 추가 구금이 시작된 시점부터로 함

□ 외부수색 및 비의료적 내부 스캔에 사용될 장비의 지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185]
○ 외부수색용 장비는 사람이 신체에 금지품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만 지정할 수 있음
○ 비의료적 내부 스캔용 장비는 체내 은닉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만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함
- 체내 은닉된 의심 물질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신호만을 생성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정밀 이미지 촬영은 허용되지 않음
○ 이러한 장비의 공식적인 지정과 관련하여 연방 총독(Governor-general)은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인 의무가 있음
- 금지 물품 또는 의심 물질 탐지에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 인체에 미치는 건강에 위험이 없거나 최소한의 위험만 있을 것
- 전문 자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할 것

### 다. 사후관리

□ ABF는 수입자의 신고 정확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반통지제도(Infringement Notice Scheme)를 통해 행정 벌칙을 신속하게 부과·집행함
○ 이는 위험기반의 사후관리(Post-Clearance Monitoring)를 수행하여 우범화물의 유통과 복합적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함

185) 호주「관세법」제219ZAB조

### 1) 사후관리제도[186]

□ ABF는 위험기반 사후조사((Post Clearance Monitoring & Compliance Audit)로서 수입 후 위험(Risk-based) 평가에 따라 서류 검토, 무작위 또는 표적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 ICS(Integrated Cargo System)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업체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문서 제출 명령, 압수 조치 등을 병행함

### 2) 벌칙

□ 「관세법」상 고의 또는 무모함 등 형사책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범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① 고의 또는 무모함 ② Tier 물품에 대한 인식 ③ 금지 및 허가 요건 위반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다만 일부 조항에서는 고의성과 무관하게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과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 기준이 적용되기도 함

-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은 승인 여부에 대한 고의성과 무관하게 사실만 입증되면 위반에 해당함
-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은 위반에 대한 법적 항변 자체가 불가능함

□ 벌금의 경우 고정 금액이 아니라 Penalty Unit(벌금 단위)을 기준으로 산정됨

○ 현재(2024년 11월 7일 이후)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1단위당 패널티는 330호주달러로, 적용 대상(연방, 주, 준주)에 따라 단위당 금액이 다를 수 있음[187]

- 예를 들면 1,000 penalty units의 경우 최대 33만호주달러 벌금이 부과됨

---

186) 호주 국경수비대, *Infringement Notice Scheme Guide*, 2024. 11.

187)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ASIC), https://www.asic.gov.au/about-asic/asic-investigations-and-enforcement/fines-and-penalties/, 검색일자: 2025. 7. 25.

□ 한편 마약류의 경우 「관세법」에서는 주로 통관절차 및 수입허가 위반, 불법 수입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벌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형법」에서는 마약류의 실질적 불법 수입 및 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함

□ 실제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호주연방검찰(CDPP)에 의한 「형법」 기반의 기소가 일반적이며, 「관세법」 위반은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적용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용됨[188]

○ 「형법」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가) 밀수입 및 수입금지물품

□ 물품을 밀수하거나 밀수품 또는 수입금지 물품을 불법적으로 운반, 소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33AB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189]

○ 법원이 해당 관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관세의 최대 5배[190]

○ 법원이 해당 관세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000 penalty units[191]

□ 그 외 수입금지 물품에 대한 수입 행위의 경우 「관세법」 제233AB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됨[192]

○ 범죄와 관련된 물품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가치의 3배 또는 1,000 penalty units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됨[193]

○ 범죄와 관련된 물품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0 penalty units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됨[194]

---

188) 호주연방검찰(CDPP), https://www.cdpp.gov.au/crimes-we-prosecute/serious-drugs/importing-and-exporting-drugs-or-precursors, 검색일자: 2025. 7. 25.
189) 호주 「관세법」 제233조 제1AA항
190) 호주 「관세법」 제233AB조 제1항(a)
191) 호주 「관세법」 제233AB조 제1항(b)
192) 호주 「관세법」 제233조 제1AA항
193) 호주 「관세법」 제233AB조 제2항(a)

□ 수입 금지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밀수품 또는 수입 금지물품을 불법적으로 운반,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이 적용됨[195]
  ○ 엄격한 책임은 「형법(Criminal Code)」 제6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음

□ 한편 상기 조항은 마약류(narcotic goods)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196]

나) 특정 물품 관련 특별 범죄

□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중대한 특정 물품(Tier 1, Tier 2)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제233BAA조 내지 제233BAB조를 두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제233조의 일반적인 수출입 범죄와 달리 고의성과 무모함(recklessness) 요소를 명시적으로 요구함
  ○ 또한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제233조 또는 다른 법조항으로 이중 처벌이 불가함

□ 호주 「관세법」 제233BAA조는 위험등급(Tier 1)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특별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197]
  ○ 위험등급 Tier 1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성능 향상 약물(specified performance enhancing drugs)
    - 특정 비마약성 약물(specified non-narcotic drugs)
    - 그 외 특정 품목
  ○ 해당 물품은 절대적 또는 조건부로 수입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특정 약물이 법령상 일정량 이하(critical quantity)로 규정된 경우 해당 수량 미만은 Tier 1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194) 호주 「관세법」 제233AB조 제2항(b)
195) 호주 「관세법」 제233조 제1AB항
196) 호주 「관세법」 제233조 제5항
197) 호주 「관세법」 제233BAA조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해당 개인이 고의적으로 Tier 1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경우
- 해당 물품이 Tier 1 물품으로 인식되었고, 해당 개인이 그 사실을 무모하게(reckless) 인지한 경우
- 해당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거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 penalty units 벌금 또는 병과 가능함

○ 승인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이 적용되며, 수입 금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 적용됨
-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은「형법」제6조 제1항,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은「형법」제6조 제2항을 참조

□ 또한 제233BAB조는 위험등급(Tier 2)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특별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198]

○ 위험등급 Tier 2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특정 화기, 탄약 및 군사 전쟁용 품목(예: 전투 조끼, 방탄복 포함)
- 특정 칼, 단도 및 유사 물품
- 특정 화학물질
- 특정 대인용 스프레이 및 가스
- 특정 핵분열성 또는 방사성 물질
- 특정 인체조직
- 특정 인체체액
- 아동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
- 특정 위조 신용·직불·청구 카드
- 그 외 특정 품목

○ 해당 물품은 절대적 또는 조건부로 수입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98) 호주「관세법」제233BAB조

- 해당 개인이 고의적으로 Tier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경우
- 해당 물품이 Tier 2 물품으로 인식되었고, 해당 개인이 그 사실을 무모하게 (reckless) 인지한 경우
- 해당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거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2,500 penalty units 벌금 또는 양형 병과 가능함

○ 승인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이 적용되며, 수입 금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 적용됨

-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은 「형법」 제6조 제1항을,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은 「형법」 제6조 제2항을 참조

# 5. 인도네시아

##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 1) 조직[199]

□ 인도네시아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소비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CE)을 두고 있으며, 16개의 본부 세관을 비롯하여 총 155여 개의 세관을 운영하고 있음

○ 관세소비세총국의 법적 근거는 1995년 「관세법」 제10호(2006년 법률 제17호로 개정) 및 1995년 「소비세법」 제11호(2007년 법률 제39호로 개정)에 따름

□ 관세소비세총국은 국경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해물품의 반입으로부터 국민으로 보호하고 수입제한 및 금지 규정과 관련된 국경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200]

---

199) EAST ASIA BUSINESS COUNCIL, eBook on East Asia Customs Procedures, 2019, p.1
200)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https://www.beacukai.go.id/arsip/abt/company-profile-of-directorate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 마약 근절 전담 부서(the drug eradication desk)를 신설한 바 있음

### 2) 마약적발 및 단속 현황[201]

□ 인도네시아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 밀수된 헤로인의 경유지이자 목적지이며, 전반적으로 마약 소비와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임

○ 헤로인 거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부패한 공직자들의 비호 속에 여전히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평가됨

○ 코카인은 주로 발리 지역에서 소비가 활발하며,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대마초는 주로 수마트라 북부에서 재배되어 국내에서 소비됨

○ 합성 마약(특히 메탐페타민)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국제 범죄조직이 개입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자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복잡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2025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톤의 메스암페타민 밀수 사건이 적발되었음

##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 1) 수입금지·제한 물품(법령)

□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장 제1절(수출입 금지 및 제한)은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general-of-customs-and-excise.html, 검색일자: 2025. 8. 4.

201) The Organized Crime Index, https://ocindex.net/assets/downloads/2023/english/ocindex profile_indonesia_2023.pdf— p,4

□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에 관한 목록은 관련 규정(MoT Regulation No. 18/2021)에 근거하여 "LARTAS 목록"에 열거되어 있음[202]

○ 해당 목록은 인도네시아 싱글윈도우 포털((http://eservice.insw.go.id/)의 "Lartas Information"에서 HS 코드 또는 제품 설명으로 검색 가능함

□ LARTAS(수입금지·제한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은 건강·환경·사회적 가치, 생물 다양성, 문화 보호 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됨[203]

○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Imports)은 다음과 같음

- 설탕 및 쌀: 특정 유형의 수입이 전면 금지됨
- 오존층 파괴 물질(ozone-depleting substances): CFC, HCFC 등 및 관련 냉각 장치 포함
- 사용된 의복, 가방, 자루류: hygienic 또는 환경 문제로 인해 금지
- 완성된 손 도구(finished hand tools): 삽, 괭이, 낫, 도끼, 가위류 등
- 수은 함유 의료기기: 수은 체온계, 혈압계, 치과 아말감 등
- 유해·독성 물질(B3): 보존제, 산업 화학물질, 중금속류 등
- 특정 약품 및 식품 성분: 허가 없는 일부 의약품과 식품 원료
- 그 외: 냉각 장치, 오존층 파괴 관련 장비 등

○ 수입제한 품목(Restricted Imports)은 다음과 같음

- 동물 및 동물성 제품, 농림수산물, 곡물, 유가공 제품, 가공식품, 의약품, 화장품, 프레임 및 타이어, 전기·전자 기기, 섬유제품, 목재·산림제품 등이며, 이들 품목을 수입하려면 해당 기술기관(예: BPOM, 농림부, 환경부 등)의 수입허가, API/NPIK 인증, 조사기관 보고서(LS) 등이 필요함

□ 한편 마약류의 경우 LARTAS(수입금지·제한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마약류에

202) 미국 상무부,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indonesia-prohibited-and-restricted-imports, 검색일자: 2025. 8. 4.

203) ASEAN, https://www.aseanbriefing.com/news/indonesia-regulates-the-prohibition-of-certain-goods-for-import-and-export-under-the-omnibus-law, 검색일자: 2025. 8. 5.

관한 법률(Law No. 35 of 2009 on Narcotics)」에 따름

○ 「형법」상 마약류의 소지, 유통, 수출입 모두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최고 사형까지 처벌 가능함

○ 마약류는 일반적인 규제나 LARTAS(수입금지·제한 목록)와 별도로 적용됨

### 2) 선별기준

#### 가) Channeling System

□ 인도네시아는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MITA, Priority Channel,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로 구분되는 Channeling System을 도입하여 통관 단계에서 차등적인 위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204)]

□ Channeling System의 적용 기준은 수입자의 위험등급(High, Medium, Low)과 수입물품(commodity)의 위험등급(Low, Medium, High)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MITA(Mitra Utama)

○ Priority Channel

○ Green Channel

○ Yellow Channel

○ Red Channel

204)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https://www.beacukai.go.id/arsip/pab/import.html, 검색일자: 2025. 8. 6.

〈표 Ⅳ-6〉 인도네시아 Channeling System

| 구분 | 지정기준 |
|---|---|
| MITA<br>(최우수) | • 세관당국(DGCE)으로부터 MITA로 지정 |
| Priority Channel<br>(최우수) | • 세관당국(DGCE)으로부터 Priority Channel로 지정 |
| Green Channel<br>(우수) | • 중위험 수입자(Medium risk importer)가 저위험 물품(Low risk commodity)을 수입하는 경우<br>• 저위험 수입자(Low risk importer)가 저위험 또는 중위험 물품(Low or Medium risk commodity)을 수입하는 경우 |
| Yellow Channel<br>(위험) | • 고위험 수입자(High risk importer)가 저위험 물품(Low risk commodity)을 수입하는 경우<br>• 중위험 수입자(Medium risk importer)가 중위험 물품(Medium risk commodity)을 수입하는 경우<br>• 비우선 MITA 수입자(Non-Priority MITA)가 고위험 물품(High risk commodity)을 수입하는 경우 |
| Red Channel<br>(고위험) | • 신규 수입자<br>• 고위험 수입<br>• 일시 수입 물품<br>• 석유산업 운영물품(BOP, Petroleum Operational Goods) 중 제2군(Category II)<br>• 재수입 물품<br>• 무작위 검사 대상<br>• 정부에 의해 특정된 물품<br>• 고위험 품목 또는 고위험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 |

자료: REGULAT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No. P-25/BC/2007

□ 또한 위험기반 선별을 거쳐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물리적 검사(Physical Inspection)를 실시하고 있음

○ 정기 검사(Regular Inspection)[205]

○ Hi-Co Scan X-ray 검사[206]

○ 관세소비세총국(DGCE) 확인

○ 세관 현장 또는 수입자 창고 내 검사[207]

205) P-07/BC/2007
206) KEP-97/BC/2003
207) P-07/BC/2007

나) 특정 품목(Produk Tertentu)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위험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특정 품목(Produk Tertentu)을 지정하여 수입 제한 목록과 수입 요건을 수시로 개정함으로써 위험선별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208)]

○ 이에 따라 특정 품목(Produk Tertentu)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 보고서(LS 또는 SKA)와 수입승인서(API-U)를 보유해야 하며, 무역부령에서 정한 기준 및 조건을 따라야 함

□ 또한 특정 품목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대상 품목은 정부가 지정한 5대 항구와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verification)를 의무화하고 있음[209)]

○ 대상 품목에는 전자제품, 섬유 및 신발류, 장난감, 식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됨

○ 해당 검사는 무역부가 지정한 조사기관(surveyor)이 수행하며, 검사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검사가 완료된 물품만 지정된 항만 및 공항을 통해 수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음

### 3) 선별시스템

가) ISRM

□ 인도네시아는 관세소비세총국(DGCE)에서 단일 위험 관리(Indonesia Single Risk Management, ISRM)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208) 인도네시아 무역부령 제94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94 Tahun 2017)
209) 인도네시아 무역부령 제87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 Tahun 2015)

○ 위험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구축된 선별(검사) 시스템으로, 고위험 화물은 집중검사, 저위험 화물은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ISRM 시스템은 INSW에 통합함으로써 수입 신고 시점부터 위험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소비세총국 및 관련 기관들은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신속하게 선별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8년 재무부 산하에 국가단일창구(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Agency, LNSW)를 설립, 2022년부터는 2세대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를 운영하고 있음[210]

- ASEAN 단일 창구를 통해 ASEAN 회원국과 전자 원산지 증명서, 통관 서류, 검역 서류 등을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양자 간 전자 문서 교환도 확대하고 있음

나) AEO

□ 인도네시아는 WCO의 SAFE Framework에 기반한 위험기반 선별시스템(Risk-Based Selection System)과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AEO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름

- 「관세법 제10호(1995) 및 개정법 제17호(2006)」 제3조 및 제4조
- 「대통령 지시 제1호(2010)」에 따라 국가개발 우선과제로 AEO 제도 명시
- 「재무부령 PMK 227/PMK.04/2014」에 따라 AEO 인증 제도에 대한 규정
- 「관세청장령 PER-4/BC/2015」에 따라 AEO 인증 절차 및 기술기준

□ 선별시스템 내 AEO 제도는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 조치 적용을 통해 선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신뢰 기반의 통관 환경 조성에 기여함

○ AEO 인증업체는 낮은 위험군(Low Risk Entity)으로 분류되어, 서류심사 및 물리

210) GOVINSIDER, https://govinsider.asia/indo-id/article/indonesia-implements-single-window-clearance-to-drive-business-process-efficiency, 검색일자: 2025. 8. 6.

적 검사 빈도가 최소화됨

○ 제한된 검사 인력과 장비를 고위험군 대상에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AEO 업체를 선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발적인 준수를 통해 위험요소의 사전 차단 및 민간의 자율통제를 유도함

#### 4) 신변검색 권한

□ 인도네시아는「관세법」제5관(신체검사) 제92조를 통해 관세소비세청 공무원에게 신체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신체검사 권한은 공항 등 현장에서 밀수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작용하며, 마약류 등 고위험 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관세법」또는 수출금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기타 법령규정에 따른 관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세소비세청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체를 검사할 권한이 있음[211]

○ 세관영역에 진입하는 운송수단에 탑승하였거나 바로 하차한 자

○ 목적지가 세관영역 이외의 장소인 운송수단에 탑승하였거나 탑승 준비 중인 자

○ 하선장소 또는 보세창고에 있거나 바로 해당 구역을 벗어난 자

○ 세관구역에 있거나 방금 해당 구역을 벗어난 자

□ 상기 조사를 받는 자는 관세소비세공무원의 조사 장소 이동 지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212]

□ 또한「관세법」제112조에 따라 관세소비세총국의 특정 공무원에게는 관세 분야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관으로서의 특별 권한이 부여되며, 특별사법경

211) 인도네시아「관세법」제92조 제1항
212) 인도네시아「관세법」제92조 제2항

찰관리 권한으로서 그 의무 중 하나로 의복 또는 신체 수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213]

○ 다만 해당 조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통지하고 수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다. 사후관리

### 1) 제도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은 DROA(심사 계획 목록)를 통해 위험도, 법규 준수 이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심사결과는 수입자 위험프로파일에 반영되어 향후 선별기준에 활용되며, 반복 위반 기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통관 전·중 단계에서 검사 비율이 상향됨

### 2) 벌칙

□ 「관세법」을 준수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는 밀수죄로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함[214]

□ 밀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수입물품을 비축, 보관, 소유, 구매, 판매, 교환, 취득 또는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5천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함[215]

□ 밀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기인한 물품의 운송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13)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12조 제2항 제i호
214)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2조
215)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3조 제d호

또는 2억 5천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함[216]

□ 한편 「마약법」에 따라 밀수입자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형,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하며, 최소 10억루피아에서 최대 100억루피아에 최대 1/3까지 가중된 벌금에 따라 처벌됨[217]

○ 인도네시아는 마약 밀수입 및 밀매에 대해 가장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외국인도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음[218]

---

216)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04조 제a호
217) 인도네시아 「마약법」 제35호/2009호 제114조
218) *AP*, https://apnews.com/article/indonesia-bali-american-man-drug-trial-905e9c4c3e37e3f1b9a4b6f56e5c20cc, 검색일자: 2025. 8. 7.

# V. 국제비교

## 1. 위험관리 조직

□ 우리나라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본청과 세관이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을 통해 실시간 위험정보를 공유하며, 위해물품의 선별 및 차단 등의 통합위험관리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수집된 정보와 주요 위험 사례는 각 세관별로 전파되며 해당 세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세관 및 유관기관 내에는 별도의 위험관리 전담 조직이 부재함

□ 미국은 CBP(관세국경보호청) 산하 NTC(National Targeting Center)에서 모든 경로의 관세국경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 수사기관(DEA, FBI 등)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음

□ 일본은 관세국 산하 NITC(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에서 위험관리를 총괄하고, 각 세관별 정보관리관(ITO)을 통해 전국적 정보 통합과 현장 집행 연계를 병행하고 있음

□ 호주는 내무부 산하 ABF(Australian Border Force)에서 위험관리 관련 집행 전반을 담당하고 정책은 내무부가 관장하는 이원화 구조를 가지며, ABF는 현장 단속 및 구금 권한을 보유함

○ 또한 ABF 산하 NBTC(National Border Targeting Centre)가 고위험 대상 선별

및 대응, 국제 협력을 통해 ABF의 집행을 지원함

□ 인도네시아는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CE)에서 위험관리를 담당함

## 2. 선별기준

□ 본 연구에서는 우범화물을 분류하는 판단 규칙인 선별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선별시스템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양자는 상호 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함

□ 우리나라는 WCO 위험관리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고시를 근거로 선별대상 지정 규칙을 설정하고, 국내외 위험정보 수집과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한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선별기준을 정하고 있음

○ 선별대상 지정 규칙은 고시 및 각종 특별법에서 선별대상의 지정 규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훈령에 따르며 비공개로 운영됨

○ 위험정보는 내부 직원, 국내 유관기관,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하며, 위험분석을 통해 선별기준을 개발함

○ 또한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해 국내 공급망 전반의 위험 수준을 관리하며, 이를 선별기준 수립과 위험관리 전략에 반영함

□ 미국은 ISF 및 CSI의 고위험 컨테이너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며, 여행자 휴대품은 전자기기 국경수색 지침과 사전정보 등을 활용하여 선별기준을 마련함

□ 일본은 NACCS와 같은 자동화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 분석 결과와 현장 세

관 직원의 판단을 반영한 다층적 선별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 호주는 위험관리 모델을 통해 고위험 화물 및 우선 검색 대상 화물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전정보(SACs/FID를 활용, ABF와 AFP의 첩보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선별기준을 구조화하여 적용함

□ 인도네시아는 수입자 및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른 Channeling System과 특정 품목 및 지정 수입자 허가 대상의 개정을 통해 선별기준을 마련함

## 3. 선별시스템

□ 우리나라는 위험관리 시스템인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동시구현시스템의 선별정보, 첨단장비를 기반으로 우범 항공편·우범국발 해상화물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준수도 관리 및 AEO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위험관리 시스템인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를 기반으로 사전정보와 위험지표를 분석하고 있으며,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통해 출발국 단계에서 사전선별을 하고 다양한 검사장비를 운용하며, C-TPAT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해외 항구에 CBP 요원을 파견하여 위험 화물을 사전 식별, 검사하고 있음

□ 일본은 위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CIS(Customs Intelligence database System)를 기반으로 화물 및 여행자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AFR(Advance Filing Rules)을 통해 출항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검사장비 및 전산체계를 연계하여 운영하며, AEO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호주는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기반으로 사전 전자정보 위험평가와 다양한 검사 장비를 운용하며, ATT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ISRM(Indonesia Single Risk Management)을 기반으로 관세국경관리 전반에서 위험관리 절차를 통합·표준화하고 있으며, AEO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4. 신체검색 권한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우범화물의 단속을 위해 검사대상자의 휴대품 검사와 장비를 활용한 외부 신변검색을 허용하고 있으나, 체강검사와 같은 정밀 신체검색은 국가마다 상이함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과 신변검색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복이나 휴대품 등 외부의 제한적 영역에 대한 검색에 한정되어 있어 체내 은닉 시 직접적인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미국은 「관세법」상 국경 수색 예외 원칙에 따라 전자기기를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포괄적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수색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이송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 탈의수색(Strip Search)이 가능함

○ 명확한 근거(clear indication)가 있을 경우 신체 내부수색(Body Cavity Search)이 가능하나, 의료 전문가에 의한 실시와 영장 확보가 원칙임

□ 일본은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물적 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장 수색에 신체 수색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영장 없이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호주는 「관세법」상 용의자 구금 및 신체수색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며 의심사유가 합리적이면 탈의수색(Strip Search)이 가능하나, 체내 은닉 시 의료적 방법은 의사의 감독하에 시행하며 일부는 법원의 영장 필요함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체내 은닉 의심 시 수색을 위해 여행자를 최대 48시간 구금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에게 신체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가운데 하나로 신체수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5. 사후관리

□ 우리나라는 사후관리제도의 일환으로 통관후 사후심사와 통관후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며, 밀수입과 관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또는 양자를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교사자·방조자, 미수범, 예비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은 사후관리제도로 Focused Assessment(FA) 제도를 통해 수입자의 내부통제와 수입거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며, 밀수입과 관련하여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미수범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사후관리제도로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밀수입과 관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미수범, 예비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호주는 사후관리제도로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세법상 벌칙에 대해 고의적 또는 무모함 등 형사책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중대한 특정 물품(Tier 1, Tier 2)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벌금의 경우 고정된 금액이 아닌 연방 및 각 주마다 상이한 1Penalty Unit(벌금 단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사후관리제도로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밀수죄에 대해서는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마약 밀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도 처벌함

〈표 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국경 위험관리제도 비교

| 구분 | 우리나라 | 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네시아 |
|---|---|---|---|---|---|
| 위험 관리 조직 | 관세청 산하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CBP 산하 NTC (National Targeting Center) | 관세국 산하 NITC (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 | ABF(Australian Border Force) 산하 NBTC(National Border Targeting Centre) |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총국 (DGCE) |
| 선별 기준 | 위험관리모델, 법규준수도 활용 | ISF, CSI 판정기준, 전자기기 국경수색 지침 활용 | NACCS 기반 다층적 선별기준 | 위험관리모델, SACs/FIDs 활용 | Channeling System, 특정 품목/ 지정수입자허가 |
| 선별 시스템 | 통합위험관리시스템 (IRM), AEO | ATS, CSI, C-TPAT | CIS, AFR, AEO | ICS, ATT | ISRM, AEO |
| 신변 검색 중 신체검사 규정 | 직접적인 신체검사 규정 없음 | 직접적인 신체검사 규정 없음 | 직접적인 신체검사 규정 없음 | 직접적인 신체검사 규정 없음 | 「관세법」상 신체검사 규정 있음 |
| 사후 관리 | 사후심사, 통관후 유통이력관리제도, 벌칙 | FA제도, 벌칙 | 사후심사, 벌칙 | 사후심사, 벌칙 | 사후심사, 벌칙 |

자료: 저자 작성

# Ⅵ.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i) 관세국경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ii) 사전관리 체계 (iii) 사후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사전관리 체계의 조사항목으로는 수입금지물품·선별기준·선별시스템, 신변검색 권한 등을, 사후관리 체계의 조사항목으로는 사후심사·벌칙 등을 고려함

□ 본 장에서는 전술한 해외 사례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현실과 환경에 부합하는 관세국경 위험관리 제도의 법·제도적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다만 해외 국가 사례는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함

- (자료의 한계) 우범화물의 특성상 위험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선별기준과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안상 비공개로 운영되므로, 단순한 국제비교만으로는 시사점을 충분히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가 간 강제적 기준 부재) WCO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WCO SAFE Framework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준에 불과하며, 회원국 간 공급망 보안과 위험관리 표준화를 위해 사실상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임

○ (국가별 상이한 우선순위) 각국은 자국의 경제·통상·안보 환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관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형태와 방식은 상이함

□ 우범화물에 대한 우리나라 위험관리 역량을 체계적 제고방안으로 ① 신변검색 등 법적 권한 명확화 ② 국내외 협력 강화 ③ 위험관리 고도화 ④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을 제안하고자 하며, 각 항목별로 다음의 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 1. 신변검색 등 법적 권한 명확화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호주는 신변검색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내 은닉물품 수색과 관련된 권한 및 절차의 명확성·범위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에게 물품·휴대품 등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체내 은닉물품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직접적인 신체검사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호주는 「관세법」에 비교적 상세한 신체수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내 은닉물품 수색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감독과 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검사 권한은 없음

○ 미국은 국경 수색 예외 원칙에 따라 전자기기·휴대품을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탈의수색과 체강수색도 가능하나, 실제 체강수색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며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이 요구됨에 따라 세관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검사 권한은 없음

○ 인도네시아는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사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의 일부로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65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 및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검사의 범위는 의복·휴대품 등 외부의 제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마약류 등 위해물품이 신체 내부에 은닉되어 반입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부재함

□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 내부 지침에 따라 '여행자 동의를 얻어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검사 절차상 1차 검사(장비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확인되더라도 추가적인 신체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대상자의 반발이 빈번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근거가 없음

□ 이러한 한계로 인해 체내 은닉을 통한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 중임[219]

○ 구체적으로는 장비검사 이상 반응 등 의심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물품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신체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임

○ 다만 의심 사유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구체적 사유를 열거[220] 하도록 하며, 사용되는 검색 장비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이러한 관련 규정은 휴대품을 통한 우범화물의 반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자칫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신체검사를 시행하거나 의심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한 여행자를 반복적으로 검사할 경우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아동권리 보호와 신변 안전을 우선 고려한 별도의 세부 지침과 보호 체계 마련도 고려되어야 함

- 이는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조[221] 및 제16조[222]에서 제시한 국제 기준과도 부합함

---

219)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 7. 31., p. 168.
220) (입법례: 항공보안법) 신체검색 사유: 검색장비 경보음, 엑스선 장비로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등
221)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모든 아동 관련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222) 제16조(사생활 보호): 아동은 자의적인 간섭이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사생활, 명예, 신용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따라서 「관세법」상 강제조치의 요건·절차·감시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동의 절차, 의료기관 활용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인력양성비용 및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 및 호주 사례에서처럼 체강검사가 일반 세관공무원이 아닌 의료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국내외 협력 강화

□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어 최근 마약 밀수 적발 물량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사회적·정책적 환경 조성이 다소 지연되어 왔음

□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 마약의 경우 적발되는 물량은 실제 유통량의 일부에 불과하며, 조직적인 대규모 밀수와 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위험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은 물론 국제 공조를 확대하여 국경 반입을 차단하고 국내 감시·단속을 통해 잠재적 유통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가. 국내 협력

□ 현재는 기관 간 협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 및 조직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정보

공유 시스템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함

□ (법·제도) 위험관리와 연계된 각 부처·기관은 소관 임무와 책임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조정·연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마약류 단속·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의 중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직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단순한 기관 간 협력 수준을 넘어 관세국경 위험관리분야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시스템·기술) 단속·수사 자료와 위험 정보가 부처·기관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시간 공유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부처·기관 간 정보 교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W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험정보의 수집·분석·공유 과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데이터 형식·보안 등의 공통 표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예측 기능 등을 활용함으로써 위험관리 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함

○ 궁극적으로는 기관 간 단절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위험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나. 국제 협력

□ 마약류 밀반입과 같은 초국경적 범죄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차단·관리가 가능함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또한 세계 마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국제 협력 촉진이 필요함을 강조함[223]

○ WCO 사무총장 역시 변화하는 범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기관 간 정

223) UNODC, *World Drug Report 2025*, 2025. 6.

보 공유, 창의적 대응 전략이 필수임을 강조함[224]

□ (국제공조) 선박과 해상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밀수의 경우 실제 적발 건의 상당수가 해외 관세당국의 첩보 제공 등 국제공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조 관계의 강화는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국가 간 첩보 공유, 합동 단속, 수사 공조 등 협력 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출발국 정보의 사전선별 활용) 출발국별 보안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보안이 취약하거나 제출 정보가 불충분한 국가의 경우에는 강화된 정보 요구와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전선별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출발국의 보안 관련 정보가 미비하거나 반복적인 밀수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 출발국이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경유지·거점으로 활용되는 경우, 국제기구에서 고위험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은 사전선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CSI를 통해 해외 세관과 공동으로 고위험 화물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일본은 AFR 제도를 통해 사전 전자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여 다른 세관과 연계하고 있음

## 3. 위험관리 고도화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WCO SAFE Framework의 규정을 기반으로 현대적 검사장비 도입,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전 전자정보의 요구 등을 자국의 통관 환경에 맞춰 적용하여 선별기준과 선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고위험이 내포된 사람·물품·운송수단에 대해 선별적·집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224) WCO, *Illicit Trade Report 2023*, 2024.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행정 위험관리분야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통관 위험관리에 과거 신고정보·적발 이력 등 자체 DB를 기반으로 학습한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임[225)]

○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이 불법 밀수 적발 등 위험관리에 도입되면서 위험성이 낮은 여행자나 화물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고위험 대상에 검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검사 인력 부족 완화와 적발률 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마약류 등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출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 근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가. 기술인프라 확충

□ 우범화물로 의심되는 화물은 세관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최종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모델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있음

○ 기존 빅데이터 분석 위주의 위험선별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면서 신속하고 정밀한 탐지가 가능해짐

□ 인공지능(AI) 기반 위험평가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구축 비용이 크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GPU 등 고성능 연산 장치와 데이터 처리 역량 등 기술 인프라의 확보가 필수적임[226)]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 모델로 위험선별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과 신뢰성 확

225)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226)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요구됨[227]

○ 인공지능(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은 피드백과 성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이러한 적응과 학습과정을 통해 정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인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국경관리 강화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기술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228]

○ 이는 기술적 인프라의 고도화가 단순한 장비 확보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인적 역량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을 시사함

□ 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 역시 방대한 통관·운송정보와 국제 위험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만큼, GPU 인프라 확충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이 필수적임

○ GPU는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분석해 고위험 대상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게 해주므로, 관세국경 위험관리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임

□ 따라서 정부 차원의 AI 인프라 확충 및 인재 양성 전략이 관세국경 위험관리에도 연계·지원된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신속·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위험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음

○ 이는 곧 고위험 화물 및 여행자 선별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높이고, 한정된 세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함

---

227)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228)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 8. 22.

## 나.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요구 고도화

□ 현행 법·제도는 마약류 등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출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험평가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기존 마약사범이 밀수에 가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마약사범의 정보는 마약밀수 단속에 필요한 중요 기초자료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로 전체 범죄 재범률(25.18%)에 비해 매년 높았음[229)]

□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3에 따라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현행 입수 가능 정보(국민의 성명·생년월일,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는 정확한 마약사범 특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및 여권번호의 정보가 요구됨

○ 여행자·화물에 대한 전수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확한 우범자·화물 선별이 중요하며, 외국인의 부정확한 한글 성명으로는 해당 사범 선별이 불가한 상황임

□ 또한 현행 규정상 '수형인명부에 기재된'의 범위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만 포함되어 벌금형 이하 사범 정보가 누락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투약 사범에 대한 정보도 필요함

○ 최근 자가사용 목적의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어, 투약 사범에 의한 마약밀수 위험성 높음

---

229) 법무부, 「2022 법무연감」, 2023. 7. 4.

- 2024년 469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함(2023년 297건)[230]

□ 따라서 현행 관세청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대상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식별정보와 벌금형 이하 사범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기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사후관리 강화

□ (현황)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후검사와 벌칙 규정을 핵심 축으로 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범화물이 반입되는 주요 경로인 밀수입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처벌 수위와 적용 기준이 상이함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밀수입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 또는 병과(징역과 벌금형 동시 적용)가 가능함

○ 미국의 경우 밀수입에 대해서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 또는 병과가 가능함

○ 호주의 경우 마약류를 제외한 일반 밀수입과 마약류를 포함한 특정 물품(Tier 1, Tier 2)에 대해 별도 형사책임을 「관세법」에 규정하며, 벌금은 'Penalty Unit'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단위 금액은 주(州) 등 관할 구역별로 상이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반 밀수입은 최대 8년 이하 또는 최대 5억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며, 마약 밀수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함

□ (문제제기) 다만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사후관리 성격의 벌칙 규정과 마약류 등 특정 위해물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험 물품을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행 제도로는 고위험 화

230) 관세청, 「관세청, 지난해 총 862건, 787kg 마약 적발.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 1. 21., p. 2.

물에 대한 사후관리 역량이 집중되기는 어려움

□ (제안1)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위험등급별로 물품을 구분하여 한정된 사후관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호주의 경우 특정 물품(Tier 1, Tier 2)을 위험등급별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관리·처벌을 적용하는 경우, 단속·검사 자원을 고위험 화물에 집중할 수 있어 분석·예방 활동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등급별 분류 체계는 위험물품 정보를 구조화하여 위험 예측과 선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선별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 (제안2) 사후관리 시스템을 「관세법」상의 미수범·예비범 처벌 규정과 연계하여 범죄 예방형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함

○ 사후관리는 통관 전 선별 단계에서 포착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사후적으로 식별하여 고위험 수입자 및 거래 관행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함

○ 이러한 사후관리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단속·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반복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위험관리는 한정된 세관 자원을 고위험 분야에 선택·집중 투입함으로써 안전확보와 신속통관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며, 사전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 위험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참고문헌


**〈국내 문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 6.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 8. 22.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 7. 31.

김경호,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통한 관세국경관리 효율화 방안」,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 4. 22.

김낭희 · 이선형 · Weisheit, R. A.,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11.

법무부, 「2022 법무연감」, 2023. 7. 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백서 2024」, 2025. 5.

황윤주, 「관세국경에서의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한 일 비교연구」, 관세청, 2019. 3.

**〈해외 문헌〉**

ABF, *FACTBOOK 2019*,

_____, *Goods Compliance Update 2024*, 2024. 10.

_____, *Goods Compliance Update*, 2025. 5.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Risk Management in the Processing of Sea and Air Cargo Imports," *The Auditor-General Audit Report*, No.15, 2011. 12.

Australian Customs Service, "Container Examination Facilities," 2005. 8.

CBP, *CBP CSI Fact Sheet*, 2011.

_____, *CBP Strategy 2021-2026,* 2020. 12.

_____,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 6.

DHS, *Cargo Targeting and Examinations*, 2010. 1.

GAO, *CBP uses ATS,* 2013.

Robert Ireland, "The Customs Supply Chain Security Paradigm and 9/11: Ten Years On and Beyond," *WCO Research Paper No. 18*, 2011. 9.

Sruti Vijayakumar, "Technology-centric and Data-Driven Customs Risk Management for Supply Chain Security," *World Customs Journal*, 19(1), 2025. 4. 30., pp. 38~62.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2024. 6.

_____, *World Drug Report 2025*, 2025. 6.

WCO, *Illicit Trade Report 2023*, 2024.

_____,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12. 6.

_____,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21.

_____, WCO *Customs Risk Management Compendium*, https://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tools/risk-management-compendiumx.

일본 재무성, 『*AEO program*』, 2024. 12.

_____, 「Post-Clearance Audit,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Division Report (2021 Edition」, 2021

_____, 「令和６年の全国の税関における関税法違反事件の取締り状況（全体版)」, 2025. 2. 19.

**〈웹사이트〉**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인천공항본부세관,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

미국 국토안보부(DHS), https://www.dhs.gov

미국 상무부, https://www.trade.gov

미국 CBP, https://www.cbp.gov
미국 ICE, http://www.ice.gov
미국 NTC, https://www.cbp.gov/frontline/cbp-national-targeting-center
일본 재무성, https://www.customs.go.jp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https://www.beacukai.go.id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https://www.jetro.go.jp/world/qa/04A-020107.html
호주 국가감사원, https://www.anao.gov.au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
호주 내무부, https://www.transparency.gov.au
호주 연방검찰, https://www.cdpp.gov.au
호주 연방경찰(AFP), https://www.afp.gov.au/news-centre/media-release/unwrapped-2024-most-creative-drug-import-attempts-revealed?utm_source=
호주 연방정부, https://www.directory.gov.au/portfolios/home-affairs/department-home-affairs/national-border-targeting-centre
호주 외교통상부, https://www.dfat.gov.au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ASIC), https://www.asic.gov.au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국정감사, 「청소년층 중심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사범, 특단의 대책 필요」, 보도자료, 2024. 10. 7.
관세청,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보도자료, 2025. 1. 15.
_____, 「관세청, 지난해 총 862건, 787kg 마약 적발.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 1. 21.
_____,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5. 1. 21.
_____,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2025. 3. 18.
_____, 「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보도자료, 2025.

5. 8.

_____, 「관세청,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 2025. 7. 24.

관세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하다」, 보도자료, 2024. 10. 31.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국내 확산 실태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 발간」, 보도자료, 2025. 5. 26.

『법률신문』,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21. 7. 16.,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71529, 검색일자: 2025. 7. 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7. 4.,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91888, 검색일자: 2025. 7. 5.

*AP*, "Trial opens in Bali for US man charged with receiving illegal ADHD pills," 2025. 8. 5., https://apnews.com/article/indonesia-bali-american-man-drug-trial-905e9c4c3e37e3f1b9a4b6f56e5c20cc, 검색일자: 2025. 7. 11.

*WCO News*, "AI does not meet your expectations? A few guidance steps to avoid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2025. 6. 23., https://mag.wcoomd.org/magazine/wco-news-107-issue-2-2025/ai-does-not-meet-your-expectations-a-few-guidance-steps-to-avoid-disappointment-and-frustration, 검색일자: 2025. 7. 11.

송기웅 서기관 외 2인 참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025, 저자와 인터뷰, 6월 9일, 대전 관세청

WCO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 Chapter 6

WCO SAFE Framework Annex I

WTO TFA Article 7.4

**〈법령〉**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 U.S.C.
18 U.S.C.
19 U.S.C.
19 CFR
인도네시아 관세법
일본 관세법
호주 관세법

관세연구 25-01

**주요국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비교**

발 행 2025년 9월 30일

저 자 김문정·김미정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ISBN 979-11-0000-000-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관세연구 25-01

# 주요국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93320
9 791166 552854
ISBN 979-11-6655-285-4